



2018학년도 제19회
한국법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법교육의 새로운 흐름

2018. 10. 20. Sat. 13:30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10-1동) 501호

주최 한국법교육학회

후원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자녀안심운동국민재단)

학술대회 세부 일정

일 시	행사내용	사 회	
등록 및 개회	13:30~ 14:00	❖ 등록	
	14:00~ 14:20	❖ 개회사 ❖ 축사	
논문상 시상	14:20~ 14:40	❖ 靑南 법교육 논문상 소개 ❖ 靑南 법교육 논문상 시상	
연구윤리교육	14:40~ 15:00	❖ 연구윤리교육 및 학회규정변경 안내	
Session 1	15:00~ 16:10	제1발표: 아르스와 법교육 - 발표자: 박지윤(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제2발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법교육 - 발표자: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교수)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1부 토론 및 논의 - 토론자: 배화순(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김자영 (공주교대 교수)
휴식			
Session 2	16:20~ 17:30	제3발표: 재판원법과 관련한 일본의 법교육 - 발표자: 김대홍(Unist 교수)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제4발표: 법과대학 폐지 이후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 발표자: 김정현(전북대학교 교수)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2부 토론 및 논의 - 토론자: 전종익(서울대학교 교수)	
폐 회			
총 회			

I. **아르스와 법교육** 1
발표자 : 박지윤(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II.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법교육** 21
발표자 :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교수)

III. **재판원법과 관련한 일본의 법교육** 47
발표자 : 김대홍(Unist 교수)

IV. **법과대학 폐지 이후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81
발표자 : 김정현(전북대학교 교수)

V. **종합토론**
토론자 : 배화순(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전중익(서울대학교 교수)

아르스와 법교육*

박지윤(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목 차

- I. 들어가며: 법교육에서 ‘법’의 의미
- II. 아르스로서의 법과 법교육
 - 1. 인문교육과 결합된 법의 기획
 - 2. 아르스로서의 법과 교육
- III. 왜 법교육에서 아르스가 중요한가
- IV. 결론을 같음하여- 삶의 예술이 되는 법교육

I. 들어가며: 법교육에서 ‘법’의 의미

법교육이 사회과 교과과정의 독자적인 교과부문으로 성장한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교육의 교육활동과 연구는 활발하게 계속되고 있다. 법교육이 도달한 이와 같은 결실은 교육계 관계자와 연구자들을 비롯하여 여러 부문에서 시도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그 노력의 결과와 더불어 법교육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물음을 다시 제기해보고자 한다.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법교육에서 법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법교육의 실천 활동과 더불어 언제나 다시 사유되어야 할 과제가 된다.

그런데 교육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교육활동이 매우 중시되는 영역이다. 법교육에 대한 실제의 경험 없이 법교육의 개념을 다루다보면 현장의 교육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에도 직면하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법교육이 전달하고자 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일은 법교육의 실천적 활동에서 법교육이 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기도 하다.

* 본고는 연구논문이 아닌 발표를 위해 작성된 발표문입니다. 특히 아르스 개념에 대한 설명은 박지윤, “아르스로서의 법”, 『법철학연구』 제20권 제3호, 2017과 박지윤, 『아르스로서의 법적 판단』,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는 별도의 인용을 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교육에서 법의 특성이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법을 어떤 측면과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본질은 어떤 요소로 전부를 드러낼 수 있는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요소로 고정된 것도 아니다. 법에 관한 지식 역시 특정한 관심과 동기에 따라 이해되었다. 다시 말해 인류의 역사에서 법은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고, 그 변화 속에서 그것의 의미를 새롭게 묻고 답하는 탐구를 통해 다양한 이해와 지식을 축적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법교육에서 법의 의미는 어떻게 파악되어야 할까. 여기서 묻는 법의 의미는 법의 특성이나 중요성, 그리고 가치 등에 한정되지 않고 법교육의 목적이나 의도와도 관련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법교육에서의 법의 의미를 아르스(ars)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과학교육에서 과학의 범위와 의미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지게 되면 과학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도 더 구체화될 수 있다. 이때의 과학은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되는 과학을 지향할 수도 있지만, 교육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교양으로서의 과학을 지향할 수도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 과학교육이 전자의 지식을 요약한 형태로만 교육내용을 형성한다면 소수의 전문과학자 양성에는 성공할 수 있겠으나 과학을 일상에서 문화로서 이해하고 향유할 사람들의 성장에는 실패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법교육도 마찬가지다. 법교육에서 교육의 주제와 대상으로 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법교육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가령 법교육지원법¹⁾에서 법교육은“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이라 정의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법교육은 법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법에 관한 이해와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

1) 법교육지원법 제2조

1. "법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법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3. "사회 법교육"이란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육을 뜻하고 있다.

이처럼 법교육이 법에 대한 명시적 지식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법에 대한 암목적 지식으로 증진되는 역량의 가능성까지를 교육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라면, 독자적인 체계로서의 이미 마련되어 고정된 법을 알고 따르고 이용하는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외의 다른 방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접근은 법교육의 독자적인 영역으로서의 중심점을 다지는 동시에 다른 학문분과 영역과의 다학제적 협업이 요구됨을 예고하게 되며 여기에는 미묘한 긴장과 균형의 유지가 요구된다. 이 지점에서 여타의 관련 교과와의 협업을 수용하면서도 독자적인 분과영역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법교육의 방향설정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본고는 법교육이 전달해야 할 법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아르스(ars)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새롭게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법교육은 법에 대한 지식의 전수만이 아니라 법으로 인간다운 삶을 만들게 하기 위한 예술, 즉 아르스의 갱신을 통해 아르스가 되는 법을 모색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II. 아르스로서의 법과 법교육

1. 인문교육과 결합된 법의 기획

법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법이 학문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던 시기로 돌아가 생각해보자. 법이 전문적인 학문으로 형성된 것은 고대 로마였는데, 이때의 법학은 시민보다는 법률가의 양성을 위해 기획되었다. 그런데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든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법학과 법학교육의 전문화로 인한 법에 대한 형식주의의 대두였다. 독자적인 법학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법의 논리적·규칙적인 양식을 우선하다보니 점차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맥락들을 배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반발하여 제기된 것이 키케로가 주창한 ‘아르스가 되는 법’의 기획이다.

키케로에게 아르스(ars)란 탐구의 산물이다. 그에 따르면 철저히 따져서 탐구되며 어떤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묶여지고 어떤 거짓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

연게 되는 것이다. 법에서 아르스가 중요한 것은 이미 주어진 법을 사안에 대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맞는 법을 찾아내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키케로는 인간을 위한 목적을 가진 아르스(ars)가 “서로가 서로를 묶는 공통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마치 혈연에 의해 연결된 것인 양 상호 결속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인문학(humanitas)이라는 학문을 새롭게 묶어내면서까지 법학과 인문학을 연계시켰다.²⁾ 키케로는 아르스(ars)를 법학의 목적규정과 분류방식에 의한 체계적인 학문을 성립시키는 공통된 원리로 삼는 동시에, 법에 대한 앞에 인간이 삶을 삶답게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인문학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술(學術)으로서의 법과 인간의 삶으로서의 법을 아르스(ars)라는 개념으로 구현시키고자 하였다.³⁾ 한마디로, 키케로는 법학에서 요구되는 체계성과 이성을 실현하는 인문정신이 아르스로서의 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 같다. 그는 이와 같은 생각을 “아르스가 되도록 정리한 시민법(ius civile in artem redigendo)”이라는 책에 옮겼다고 전해지나 후대에 전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키케로의 기획은 이후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재발견되었다.⁴⁾

14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목적을 가진 아르스(ars)로서의 법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키케로를 좇아 “아르스가 되도록 정리한 시민법(De iure civili in artem redigendo)”를 모토로 삼았다. 그러나 인문학의 세부 분과들이 후에 이성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을 기준으로 위계화 되면서, 인문정신으로서의 법은 인문학의 세부분과 중에서도 이성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게 되었다. 이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역설하면서도 인간의 신체와 관련되는 영역을 저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의 시대적 한계를 보여준다. 하지만 문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과 법학의 접목은 영미법 전통에서 법교육의 전통이자 그 핵심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법문학(Law and Literature)과 법수사학(legal rhetorics), 법인문학(Law and Humanities) 등의 법학 분과학문의 목적과 역할이 바로 아르스가 되는 법의 기획으로서의 법과 인간다운 삶의 접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문정신과 관련된 아르스가 되는 법의 기획은 법을 인

2) 안재원, “인문학(humanitas)의 학적 체계화 시도와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ars개념을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제39권, 한국서양고전학회, 2010, 91-127면.

3) 위의 논문, 114면.

4) 서울오 교수는 키케로 당시의 로마법학이 그의 이상과 매우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오, “인문학으로서의 법학: 체계적 사고와 문제중심적 사고의 간격”, 『법철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6, 49면.

식하고 자연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정법이 형식화될 때마다 새롭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기획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그 자체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아르스가 되는 법의 기획은 첫째, 이성중심의 이원론의 한계 속에 위치한 것이었고, 둘째, 수동적인 교육방식의 한계로 인해 기획의 의도대로 전달되기 어려웠으며, 셋째, 실무법학의 주류를 형성하는 데에도 실패하였다. 그러나 아르스가 되는 법의 기획은 비록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지는 않을지라도 쉽게 포기될 수 없으며, 각 시대마다 다시 추구되고 재구성되어할 과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법교육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 아르스로서의 법과 법교육

1) 법에서의 아르스 개념

그런데 아르스란 법과 어떤 관련이 있기에 법이 아르스가 되도록 하는 기획까지 마련되었던 것일까. 로마의 법률가 켈수스(Celsus)의 법언에는 ‘법은 선과 형평의 기술(Ius est ars boni et aequi)’이라는 말이 있다.⁵⁾ 이 법언은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의 학설회찬(Digest) 앞부분에서 등장한다. 율피아누스(Ulpian)는 이 부분에서 법의 진정한 정의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법이란 정의의 이름을 따르는 것으로 켈수스가 ‘선과 형평의 기술’이라고 우아하게 정의내린 이래 명명된 것”이라고 지적한다.⁶⁾ 이로부터 법조인들은 주어진

5) Ius est ars boni et aequi에 대한 영어 번역은 “The law is the art of goodness and equity”에 해당하며, ars에 대한 번역으로 art, skill, craft, technic 등이 쓰이는 한편 aequi에 대한 번역으로는 equity와 equitable, just 등이 쓰이고 있다. 다양한 번역어는 다른 문화권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 법언에 대한 대표적인 일본어 번역은 “法は善および平衡の術である”인데 반해, 중국어 번역은 “法是善良與公正心藝術”이라고 옮기고 있다. 일본어 번역이 “법이란 선과 형평(equity)의 술(skill)”이라고 하는 것에 반해 중국어 번역은 “법이란 선량과 공정심(just, equitable)의 예술(art)”로 풀이되었다. 일본어 번역과 중국어 번역 부분은 한동일, 『유럽법의 기원』, 문예림, 2013, 6면, 각주 19 참조.

6) 율피아누스는 켈수스의 이와 같은 정의가 ‘우아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아(elegantia)는 법학 용어라기보다는 품위 있고 적절한 행위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도덕적·미학적인 표현에 해당되었고 로마 법률가들은 사건이 잘 판단되었다고 할 때 ‘우아하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법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그 사안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다루었다는 평가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우아함이라는 기준은 비록 부차적이기는 하지만 법률가들의 진술에 대한 특별한 기품과 어조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법수사학에서도 등장하게 된다. H. Wieling, “Eleganz und

사안에서 “불공정한 것으로부터 공정한 것을 분리하고 비합법적인 것으로부터 합법적인 것을 식별하여 무엇이 선하고 공평한지”에 대한 소식을 공언하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숭배하는 사제(priest)로 여겨지며,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위협 뿐 아니라 보상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호소를 통해 사람들을 선하게 하는 참된 철학”이 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가된다.⁷⁾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세 가지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켈수스가 말하는 법은 인간에 의해 정해진 실정법(lex)이 아니라 고차법을 포함하는 법(ius)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아르스란 고차법을 찾아내고 고차법에 실정법을 매개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그는 아르스로 법에는 법적 강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에 의한 정확한 결과의 도출만이 아니라 법적 사안의 당사자 및 전체 공동체를 향한 설득과 인간적인 가치의 반영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덧붙여 그는 아르스 자체를 법과 동일시하였고 이것이 법의 진정한 정의(true definition)라고 까지 하였다.

물론 고대 로마에서 아르스(ars)가 법에만 사용되는 특수한 용어는 아니었다.⁸⁾ 라틴어 아르스는 영어 아트(art)의 원형이 되는 단어다. 그러나 아트(art)가 순수예술(fine art)의 의미로 대표되기 이전에⁹⁾ 그 어원을 이루는 라틴어 아르스(ars)는 기술(기예), 학술, 예술을 아우르는 총체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르스는 미학적인 예술작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수단이나 수완으로서 제작기술에 대한 지식 또는 능력에 해당하기 때문에¹⁰⁾, 오늘날로 보자면 예술 개념보다는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

Sachzwang im Römischen Statusrecht”, Fundamina Vol.11 No.1, 2005, 415-424면.

7) C. Kreuzsaler & J. Urbanik, “Humanity and In Humanity of Law: The Case of Dionysia”, *The Journal of Juristic Papyrology*, Vol.38, 2008, 122-123면.

8) 라틴어 아르스(ars)는 그리스어 테크네(technē)를 번역한 말로 학문, 학술, 학예, 술학, 기술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이다. 그리스어 테크네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단순한 경험지(empeiria)에 대비되는, 장인의 단순한 반복적 기술이나 솜씨를 넘어선 학문 일반을 뜻하게 되었다. 강손근은 테크네가 로고스(logos)를 통한 해명과 접근이 가능하고, 개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의 체계적인 이론(theoria)로 성립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강손근, “근대 예술 개념의 성립에 관한 연구”, 『철학논총』 제65집 제3권, 새한철학회, 2011, 13면.

9) 1747년 샤를로 바뜨는(charles Batteux)는 미술(beaux arts, fine arts)라는 말을 만들어 냈다. 바뜨는 다섯 가지 중요 과인아츠를 회화, 조각, 음악, 시, 무용으로 꼽았고, 여기에 건축과 웅변(수사)를 덧붙였다. 18세기에 아트는 아르스 개념과 분리되어 예술과 과학도 분리되었으며 이는 수공예(craft)도 마찬가지였다. W. 타타르키비츠, 『예술개념의 역사』, 열화당, 1986, 25-26면.

10) 이러한 측면에서 아르스를 ‘솜씨’라고 국역하기도 한다. W. 타타르키비츠, 손효주(역), 『미학의

력'을 뜻하는 기술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르스를 기술로 보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의 기술은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자연의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으로 한정되어 정의되기 때문이다.¹¹⁾ 이러한 정의는 현대에서는 테크닉(technic) 내지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개념에 대응되는 것이다. 삶의 예술(art of life, lebenskunst)와 같은 개념에서 예술을 기예나 기술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래의 총체적인 의미를 새겨 본다면 아르스 개념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 단어로 간단히 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대의 예술이나 기술(기예) 또는 학술 중 어느 하나로 쉽게 번역될 수 없는 아르스의 의미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추적하고, 이를 통해 실천학으로써의 법교육의 학적 목적을 분명히 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라틴어 아르스 개념의 원형이 되는 희랍어 테크네(techne) 개념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법이 학문으로 성립된 것은 로마였지만 고대 희랍이야말로 모든 시민이 법을 가지고 공적활동에 참여하고자 하였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대 로마에서 법을 아르스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고대 희랍에서 법을 테크네로 파악하였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¹²⁾

고대에서 테크네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제작하는 지에 관한 지식 또는 능력'을 의미하였다.¹³⁾ 이 용어를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지만, 테크네의 실천적인 측면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은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서이며¹⁴⁾ 소피스트들과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히포크라테스는 환자의 개별적인 몸과 질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헤아리고 치료하는 방안을 추출해내는 실천판단의 요소를 테크네로 파악하였다. 히포크라

기본개념사』, 미진사, 1993, 25면.

11) 류창렬, “기술의 의미에 관한 사회문화적 고찰”, 「직업교육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직업교육학회, 1992, 55-56면.

12) 일각에서는 아트와 아르스 그리고 테크네의 개념의 연관성을 인정하지만 각각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기도 한다. 이를테면, 아르스에는 “만드는 사람의 관념이나 사상 또는 가치가 반영”되는 반면에 테크네는 “무엇을 만드는 능력, 솜씨, 기술 그 자체”를 의미하며, 아트는 “만들어진 결과로서의 작품”을 뜻하는 것이라고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법의 아르스’와 ‘법의 테크네’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이 개념들을 서로 연결지어 고찰해도 무방할 것이다.

13) T. Angier, *Techne in Aristotle's Ethics Crafting the Moral Life*, Continuum, 2010, 3면.

14) 이것에 관해 설명한 국내논문으로는 반덕진, “고전기 그리스에서의 테크네-튀케와 테크네-엠펜페 이리아”, 「의사학」 제20권 제1호, 대한의사학회, 2011 참조.

테스의 저작이라고 알려진 ‘아포리즘(aphorism)’의 첫 문구인 ‘Ars longa, vita brevis’은 흔히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테크네는 길고, 인생은 짧다’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문은 ‘인생은 짧고, 아르스는 길며, 기회는 순식간이고, 실험적인 경험은 위험을 내포하며, 판단은 어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에 따르면 아르스는 불확실한 문제 상황에서 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와 훈련방식을 일컫는 것이다.

플라톤은 이와 같은 테크네를 법과 관련시켰다. 그는 테크네 중의 테크네, 즉 최고의 테크네가 법에 대한 테크네라고 보았다.¹⁵⁾ 왜냐하면 법에 대한 테크네는 선의 이데아를 쫓아 로고스에 의해 운영되는 폴리스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톤이 항상 테크네를 긍정적으로 보았던 것은 아니었다.¹⁶⁾ 왜냐하면 테크네가 이데아에 대한 허구를 제작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소피스트들이 옹호하는 법적 수사에 대한 테크네의 강조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나중에는 테크네의 이상적 지향이 선의 이데아에 있다고 봄으로써 테크네를 긍정적인 것으로 수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선의 이데아는 “정의로운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좋은 것들인지”를 아는 것¹⁷⁾과 관련하기 때문에 판단을 행사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게 되며, 법의 테크네를 포함하는 정치적 테크네로 획득된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이 덕(arete)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¹⁸⁾ 이를테면 기술을 배우면 지식을 획득할 뿐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정의를 배우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정의로운 통치체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⁹⁾

이런 의미에서 정치에 대한 테크네 중에서도 사법술, 특히 재판술(dikē)²⁰⁾은 ‘사람들을 절제 있게 하고 더욱 정의롭게 만들어 주며, 몹쓸 상태를 치료하는

15) Gorgias 478c, 478e.

16) 플라톤의 저작에서 나타나는 테크네의 개념은 다음을 참조, D. Roochnik, *Of Art and Wisdom: Plato's Understanding of Technē*,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6, 187-192면.

17) Politeia VI, 506a.

18) 이러한 견해는 하나의 해석이지만 플라톤의 저작을 통틀어 실제로 선의 이데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와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으로 주광순, “고대의 technē에 대한 존재론적 반성에 대한 현대 과학·기술사회의 관점으로부터의 검토”, 「대동철학회지」 제18집, 대동철학회, 2002, 29면.

19) 위의 논문, 32면.

20) 디케는 옳음(마땅함, 정당함), 소송, 판결(심판), 재판, 처벌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디카이오쉬네와 같은 뜻으로도 사용되었다. Gorgias, 478b.

의술'과 유사하게 평가되었다.²¹⁾ 의술이 몹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면 법술은 불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 그에 따르면 특히 재판술은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과 무절제한 자들을 무절제와 불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큰 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치료'이자 불의를 지닌 채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자는 최악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의술을 포함한 다른 테크네보다 더 훌륭한 것으로 여겼다.²²⁾ 여기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의학이 일시적 대중요법에 의존하지 않는 것처럼 플라톤은 법의 테크네, 즉 사법술도 아침술과 같은 세상물정을 잘 읽는 테크네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는 점이다.²³⁾

반면 소피스트들은 법에 의한 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식의 추구라는 점에서 테크네에 천착하였다. 이는 히포크라테스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판단의 요소로서의 테크네 개념과도 이해를 함께 한다. 이를테면 히포크라테스 코르두스(Hippocrates Cordus) 중 하나인 '고대 의학에 대하여'에서는 튀케(tychē)와 테크네의 대립을 통해 의학에서의 테크네의 의미를 이끌어낸다. 당시의 시인이나 극작가들은 그와 반대로 의술이 신의 선물이라고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의술이 신의 자의적인 개입이 가능한 튀케의 작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히포크라테스 의사들은 비록 의학이 신의 선물이기는 하지만 우연으로서의 튀케가 아니라 자연의 규칙성으로부터 인간이 그 본질을 알 수 있게 되는 피시스(physis)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²⁴⁾ 의학에서 테크네는 인간의 이성을 활용하여 관찰과 추론을 통해 환자의 체질과 몸 상태를 파악하고 질병과 그 경중을 헤아려 훌륭한 탐구로서 유용한 차이들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실천적 기술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의술에서 유의미한 최초의 발견들은 피시스를 기반으로 하는 테크네에 의한 것이지 단순한 우연에 맡겨진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환자의 상태를 튀케, 즉 운명에 내맡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히포크라테스 의사들은 테크네를 통해 의학적인 문제상황이 정확하게 해결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은 일시적인 우연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수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소피스트들은 테크네가 인간에 의한 정확한 문제해결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21) 위의 책, 478d.

22) 위의 책, 478b, 478e.

23) 불의(不義)라는 질환이 고질이 되어 혼을 속으로 굽게 하여 치료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도록 의사에게 가듯이 재판관에서 서둘러 가야 한다. 그리고 불의를 변호하기 위한 연설술에 사법술이 의존해서는 안된다. 위의 책, 480b~c.

24) M. J. Schiefsky, *Hippocrates: On Ancient Medicine*, Brill, 2005, 3면.

히포크라테스와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히포크라테스와는 달리 사회적 기능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²⁵⁾ 소피스트에게 테크네는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지님으로써 시민의 삶과 생존을 보호하고 위험에서 구해 줄 수 있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의술은 환자로부터 병을 낫게 하고 고통을 덜어주며, 요리술은 원기를 유지시켜주고 배고픔을 덜어준다. 또한 테크네는 지식과 솜씨와 관련하여 과거의 사례를 모으고 그로부터 현재에 대해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조처를 취한다. 그래서 훌륭한 테크네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의 한계까지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테크네는 가르치고 전수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이 테크네에 적합하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할 척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각자의 경험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능력은 의욕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교육을 충분히 받고 소질이 있는 사람에게 구비되는 것이다. 소피스트에게 테크네는 인간 생존과 자기보존에 필요한 수단으로 등장한다.²⁶⁾ 다른 모든 동물들은 생존에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고 태어나지만 인간만은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으며 이성(logos)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²⁷⁾ 그러나 인간은 이성(logos)라는 능력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테크네를 고안한다.

그런데 테크네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한다. 예상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것은 테크네가 아니라 어떤 시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뜻하는 아크리베이아(akribeia)는 테크네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된다. 소피스트들은 테크네를 적용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천착하였다. 그들은 플라톤과는 달리 테크네가 특정한 목적 하에 동원되는 것이기보다는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테크네의 속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소피스트들은 자연인 퀴시스(physis)와 인간의 테크네를 분리시키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상위에 두게 된다.

반편, 플라톤은 소피스트들과는 달리 테크네를 퀴시스과 분리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테크네와 퀴시스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아니다. 그는 자연과 우연에 해당하는 퀴시스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물의 생성원리인 것에 반해 테크네는 사물 간의 생성원리라고 보았다.²⁸⁾ 그래서 퀴시스가 자연의 로고스에 의

25) 위의 논문, 7-11면.

26) 반대로 칼리클레스는 세상물정을 잘 읽는 테크네를 익히라고 말한다. Gorgias 486c.

27) Protagoras 321c.

28) Nomoi X, 892b.

한다면 테크네의 원리는 인간의 로고스(logos)에 의하여야 한다. 특히 공적 사안의 결정에 있어서 인간에 의한 로고스가 선의 이데아를 추구하지 않고 단지 로고스를 모방하는 것과 같은 소피스트들의 수사술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플라톤은 테크네를 로고스와 관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경험으로는 테크네가 파악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경험과 테크네를 분리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로고스와의 관련성에 따라 테크네를 나누었다.²⁹⁾ 테크네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지식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경험과 구별된다.³⁰⁾ 즉, 테크네를 가진 사람은 왜 그것이 목적에 맞는지를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험에 의한 숙련과 다르다.³¹⁾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테크네를 지식보다는 능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도 테크네를 로고스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플라톤과 동일하다. 하지만 그는 테크네를 사용하는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한다. 예를 들어 이성을 결여한 자연적 능력인 불은 자신 안에 있는 원리에 의해 어떤 것을 뜨겁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뿐이지만, 의술과 같은 테크네는 제작자가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나올 수도 있고 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³²⁾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테크네가 서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강조하였다.³³⁾

그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테크네를 산출과 관련한 원리와 관련된 인간 행위의 양식 중 하나로 파악한다. 이것은 필연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우연적인

29) 플라톤은 테크네를 여러 종류로 나누는 데, 하나는 만드는 테크네인 제작술(poietike)이고 다른 하나는 얻는 테크네인 획득술(ktetike)에 해당한다. 한편, 지식과 관련이 없는 놀이(paideia)에 불과한 모방적인 테크네(mimetike)와 도구의 지식에 관한 제작적인 테크네로 나눈다. 제작적인 테크네는 이데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제작 대상과 사용에 관한 일정한 지식을 요구로 한다. 플라톤은 도구를 제작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지식을 가진 것이 더 우월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식의 정도에 따라 도구를 사용하는 테크네, 도구를 제작하는 테크네, 모방하는 테크네로 구분한다. 한편, 모방하는 테크네는 걸모양을 동일하게 읊기는 모사술(eikastike)에 의한 아이콘(eikon)과 닮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환영술(phantastike)에 의한 판타스마(phantasma)로 나뉜다. Sophistes, 219b, 220e~221a, 235d, 236c.

30) Gorgias, 454c~e, 465a.

31) 플라톤은 요리법이 테크네가 아니라 경험에 불과하다고 본다. 위의 책, 462d~e.

32) Metaphysica IX, c.2, 1046b5~8.

33) 모든 기예(techne)는 생성과 관계하며,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의 원리가 제작자에게 있으며 제작되는 것에 있지는 않는 것들 중 무엇이 생겨나도록 궁구하고 고안하는 것에 관계한다. Ethica Nicomachea VI, c.4, 1140a 1116; Ethica Nicomachea II, c.6, 1106b14.

측면이 포함되지만 산출된 대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제작자의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다.³⁴⁾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테크네 개념은 덕(arete)에 대한 논의 속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³⁵⁾ 테크네는 산출된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습성(hexis)에 의해 도출된다. 습성이란 어떤 사물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겪음으로써 소유하게 된 상태로 사물의 본성은 아니지만 마치 본성처럼 사물에 고착되어 존재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혼에게 여러 좋은 습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습성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영혼의 감각적 부분에 속하는 탁월함은 성격적 탁월함(the ethike arete)으로, 영혼의 이성적 부분에 속하는 탁월함은 지성적 탁월함(he dianoetike arete)라고 나누었다.³⁶⁾ 그리고 지성적 탁월함을 필연적인 존재자를 인식하는 능력과 우연적 존재자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나눈다. 이 때 우연적인 존재자로서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행위하는 것들과 관련한 인식적 능력 중에서 '산출(poiesis)의 방법을 잘 숙고하는 탁월함'이 테크네(techne)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같은 테크네가 엠페이리아(empiria), 즉 경험을 통해 획득된다고 보았다. 즉, 그는 테크네와 경험이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페이리아를 지각과 기억을 통해 인간에게 얻어지는 것으로 보고 테크네가 로고스로 획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플라톤과는 달리 양자의 관계를 위계적인 측면보다는 순환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였다.³⁷⁾

테크네 개념을 둘러싼 철학자들의 이해가 서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위의 논의를 통해 테크네에 대한 다음의 주요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³⁸⁾ 첫째, 테크네는 그때 그때의 우연이 아니라 규칙(rules)과 계율(precepts)을 내포하며 인간이 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법의 테크네는 공동체 내의 인간 생존 및 번영과 직결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간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 셋째, 테크네는 로고스와는 구분된다. 테크네는 앎에 의한 것만 아니라 실제로 함에

34) *Metaphysica* IX, c.2, 1046b5~8.

35) *Ethica Nicomachea* VI, c.4.

36)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적 탁월함에는 학문적 인식(episteme), 지성(nous), 철학적 지혜(sophia), 기예(techne), 실천적 지혜(phronesis)가 있다고 하면서 앞의 세 가지를 필연적 존재자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나누었다. 에피스테메는 '연역적 방식에 의해 증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함'이고, 누스는 '원리를 잘 직관해내는 탁월함'이며, 소피아는 '이 두 가지 인식적 탁월함을 통해 최상위의 완전한 존재자를 인식하는 탁월함'이다. 위의 책, 같은 면.

37) *Metaphysics* 980b28~981a2.

38) 던은 현대 철학의 실천적 과제가 테크네와 프록네시스 간의 문제로 집약된다고 지적한다. J. Dunne, *Back to the Rough Ground: 'phronesis' and 'techne' in Modern Philosophy and in Aristotl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3), 252면.

의해서 획득된다.³⁹⁾ 다시 말해 법의 테크네는 지식에 의해서만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법적 문제해결 방안을 산출하는 행위 속에서 능력으로 연결 될 수 있다. 넷째, 법의 테크네는 인간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고스의 반영인 법을 인간의 로고스로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러 테크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또한 테크네는 임시변통적인 문제해결만으로 족하지 않고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더해 법의 테크네가 인간과 폴리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근원적인 아이디어를 향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기까지 한다.

2) 고차법의 인식을 위한 인간의 탐구

법은 인간에 의해 제정된 실정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법, 즉 상위의 법이 있다는 생각은 법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반영한다. 이는 인류에 의해 지지된 법사상에서 끊이지 않고 지지되었다. 이와 같은 자연법 사상은 소수의 전문집단에 의해 법이 좌지우지되는 것에 대해 제한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법의 실천이 인간의 경험과 분리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반면 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자의에 맡겨져 자연법 사상을 타락시키게 되는 폐해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에 대한 자연법의 우위를 강조하는 고차법 사상은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도 법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게 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었다. 그래서 자연법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구하는 토대가 된다.

그렇다면 자연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는가.⁴⁰⁾ 명시화된 지식으로 제공되는 실정법과 달리 자연법의 내용은 암묵적인 영역에 있다. 혹자는 실정법전에 이미 자연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실정법만으로도 법적 문제해

39) 테크네는 인간의 행위 속에서 실천되고 외적인 것으로의 산출물의 생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로고스와는 다르다. 로고스가 이성과 머리에 관련된 것이라면 테크네는 제작과 가공물의 산출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육체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의 세계를 관조하는 활동과 그 지식인 테오리아가 변하지 않는 자유민의 것이라면, 무엇인가를 제작하는 행위인 테크네는 시간성 내에서의 육체적 노동이라는 점에서는 노예의 것에 가깝다고 보았다.

40) 자연법을 무엇으로 정의하던 간에 필자는 한 인간이 마치 실정법처럼 자연법의 전체 내용을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각 상황에 매개되는 자연법은 인간이 어울려 서로를 울림으로써 즉, 상호작용 속에 공명함을 감지하고 숙고함으로써 파악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본 논문에서는 일단 고차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결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할지 모른다. 그러나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법규범의 매개를 포기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임시변통적인 해결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에 맞는 고차법에 대한 파악이 요청된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자연법을 매개하는 인간의 능력이 이성에 있다고 보았다. 이를테면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의 본성을 인식하며 신과 우주세계의 보편적 이성을 나눔으로써 우주만물을 아우르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분법적 이성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인간의 다른 능력은 물론이고 육체와 관련된 삶의 다양한 요소들을 배제시키게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포기하고 나면 무엇으로 우리가 자연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이성의 개념을 해체하거나 이성과 무관한 다른 관념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문제는 발생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세계를 붙박아두는 기존의 고정된 이성관 대신에 세계의 변화 속에서 함께 감응하는 역동적인 이성관의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성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기반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진화된 결과로 형성된 것으로, 실제적인 인간의 활동과 관련되어 연속된 경험 속에서 진화한 산물로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 이성을 완성함으로써 자연법을 인식하고자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에 대한 기획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법으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탐구에서 극대화될 수 있다. 키케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거짓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철저한 탐구 속에서 구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그가 이해한 것과 달리, 고정된 이분법적 실체를 가지지 않은 이성은 탐구로 삶의 조건을 실제로 변화시켜 나가는 방식과 직결되며,⁴¹⁾ 감각, 지각, 감정 등도 삶 속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체의 진화과정에서 발달된 인간 능력의 요소로 탐구에 관여하는 것이다.⁴²⁾ 마찬가지로 플라니는 신체의 작용이 지각에 관여하며 인간의 고차적인 모든 사고와도 관련을 맺는다고 지적한다. 그는 우리의 신체가 외부 지식을 파악하는

41) 탐구는 유기체의 행위의 장인 상황에서 초래된 불균형을 균형의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불균형을 초래한 원인들에 관계적 질서를 부여하는 인지적 조작을 거치지만 이는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삶의 요소로 전환시켜가는 유기체의 존재유지 방식이다. J. Dewey, *Logic: The Theory of Inquiry*, Henry Holt and Company, 1938, 106면.

42) 듀이는 기존의 이성 개념을 자연화된 지성(naturalized intelligence)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지성이 고정된 별도의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의 방법과 가설로서의 이론 그리고 실험적 평가의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주제들에 대한 탐구에 의해 삶의 물리적인 조건과 생리학적인 조건을 변혁시키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송광일, “듀이의 자연화된 지성 개념”, 『철학연구』 제97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2, 220-221면.

데 요구되는 도구이며 이를 통해서 외부 사물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세상을 경험한다고 본다.⁴³⁾

이렇게 본다면 고차법이란 유기체로서의 인간의 삶에 협응해왔던 법이 우리의 몸에 착화됨(dwelling in)으로써 파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자신의 감각, 지각 및 감정 등은 고차법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적인 단서가 된다. 우리의 몸은 수많은 인간의 삶을 거친 진화의 흔적이 담겨 있으며, 하나의 개체로 죽기 전까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연속된 경험의 과정 속에 있다. 고차법에 대한 발견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고정된 범규범의 실체를 추상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몸을 도구로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한 탐구를 거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르스 개념은 법교육을 통한 탐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바가 무엇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법에 대한 기존의 경험과 지식을 오늘날로 끌어 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실정법의 운용과 인간다운 삶의 산출

실정법에 대한 지식이나 지침을 간소화된 형태로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교육이 담당하는 역할 중에서도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교육이 도달해야 할 지점은 실정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가 된 법적 사안에 맞는 법을 매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때로는 기존의 법지식 자체보다는 법감정에 대한 교육이 될 수도 있다. 카우프만은 법감정을 ‘올바른 선이해를 갖는 예술(art)’로 정의한다. 이때의 예술이 바로 아르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카우프만은 이와 같은 아르스가 법적 문제해결의 결과를 선취하고 법이 사후적으로 이것에 대한 근거들과 제한이 제시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에 따르면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것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것을 다시 개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기민한 정신을 요구하며 상상력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⁴⁴⁾ 카우프만은 올바른 선이해를 갖는 기술이 법 발견에서 가

43) 폴라니는 몸이 외부 사물이 아니라 우리의 한 부분이라고 느끼는 것은 몸이 지적인 작용을 하는데 동원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우리가 몸을 통해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별하여 주의를 기울여 활용하는 경우, 그 활용도에 따라 사물은 다른 양태를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이는 마치 우리 몸을 통해 파악하게 된 외부 사물을 우리 몸의 일부로 느끼는 것처럼, 사물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사물에 주의를 기울인데 따라 사물을 달리 파악하는 것과 같다. 마이클 폴라니, 김정래(역), 『암묵적 영역』, 박영사, 2015, 66면.

장 인간적인 부분에 해당하며, 어떤 고도로 발전한 기술도 법발견 절차의 순환성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⁴⁵⁾ 또한 그는 법발견에서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법적 문제해결의 질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덧붙인다.⁴⁶⁾ 이와 같은 고찰은 법교육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자기에의 파악이 기존의 법에 대해 순종하는 자기통제의 주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려의 주체로써 자기가 모색한 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주체의 방식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자가 사안에 맞는 법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법을 경유하여 창조할 수 있는 삶은 다른 개체의 삶에 대해서도, 나아가 인간성을 계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의 실현에 대해서도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다운 삶의 산출하는 시민의 삶을 만드는 것이다.

Ⅲ. 왜 법교육에서 아르스가 중요한가.

그런데 특히 법교육에서 아르스 개념이 거론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인간의 법적 문제해결의 방식을 구하여 삶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는 법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기계에 의해 쉽게 모방될 수 없는 인간의 능력과 특질에 의한 법적 문제해결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는 것이기도 하다. 유기체인 인간이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에 맞는 법규범을 매개하기 위해서는 책에서 배운 법에 대한 지식을 동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안에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느껴진 사안의 문제에 입각하여 법을 찾아내야 하며, 기존의 법을 적용하여 나올 수 있는 수많은 결과를 상상하여 가장 나은 방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 속에서 법을 다루는 방식을 체득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많은 법지식이 인류에게 축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을 운용하지는 못한다. 환경과 상황에 맞는 법지식을 가려내고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암묵적인 지식과 능력의 체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있으며 답습되는 것이

44) A. 카우프만, 김영환(역), 『법철학』, 나남, 2007, 161면.

45) 위의 책, 같은 면.

46) 위의 책, 210면.

아니라 갱신하여야 하는 것이다. 듀이는 이와 같은 갱신이 민주주의의 자양분이자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인간이란 이성보다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행위의 목록이자 앞으로의 행위의 경로를 이끄는 양식인 습관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습관은 자아가 획득하는 것이기에 별도의 기능을 담당해서 갱신될 수도 있는 것이다.⁴⁷⁾ 이와 같이 갱신될 수 있는 습관의 가능성을 그는 아트(art)에서 구하였다. 주지하듯이 듀이는 아트를 오늘날의 예술(fine art)의 개념으로 보지 않았다. 아트는 개별적 자아의 내적 조건이 외적인 환경과 접촉하는 방식인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축적된 행위의 기능으로서 개인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다⁴⁸⁾

그러나 그는 습관과 연관된 인간의 아트(art)를 간명한 형태로 정의 내리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듀이는 아트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보았던 아르스 개념과 유사하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아트는 “감각 기관과 운동기관의 숙련기술, 재주나 기교, 그리고 경험 자료를 모두 포함하는 말”로 “사물의 에너지를 동화시키고, 환경의 통제권 안에서 출현”하며, “질서와 규율을 필요로 하면서 생겨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을 법에 대한 인간의 아트, 바꿔말해 아르스로 바꿔 생각해보면 아르스는 ‘불확정적인 법적 사안에서 인간적인 삶을 정향하는 고차법을 찾아내고 이것을 실정법과 매개시키는 탐구로 법적 문제해결을 위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규칙적 방식의 체화된 경향체계’라고 할 수 있다. 불확정적인 법적 상황에서 창발하는 가능성의 공간을 파악하기 위한 체화된 활용능력은 이를 탐구하는 각자의 경험 속에서 형성되며 다양한 형태로 포개지고 중복되며 겹쳐진 중층체계들의 형태를 가진다.⁴⁹⁾ 그것은 비환원적인 부분을 포함하지만 규칙적인 양상을 가지고 패턴으로 나타나며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의 즉각적이면서도 숙고된 활용에 의해서 법적 문제해결의 결과가 선취되고 사후적으로 근거들과 제한이 제시된다. 그리고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것 사이를 전환하면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을 조정하는 방식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르스가 법적 문제해결의 고정된 습관적 방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47) 존 듀이, 송도선(역), 『인간 본성과 행위』, 공동체, 2006, 21면.

48) 습관은 과거와 현재의 구체적인 행위에 의해 형성되는 기질(predisposition)로 인한 주착심(affection)이고, 현재와 미래의 행위에 추진력을 가진다. 습관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내재된 우리 자신의 일부이다. 위의 책, 30면.

49) Brent Davis, Dennis Sumara, Rebecca Luce-Kapler, *Engaging Minds*, Taylor & Francis, 2008, p.144.

습관이 환경과의 작용 속에서 협동하는 사회적 기능이라면⁵⁰⁾ 아르스는 법을 사용하는 습관 속에서 나타나지만 그러한 습관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다. 아르스는 환경과 상황을 통제하고 사물의 에너지를 동화시키는 가운데, 문제상황의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발하는 질서와 규칙의 가능성의 공간을 파악함으로써 출현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 개인으로써 법적 문제해결자의 아르스의 발휘는 개인이 이룩한 요소와 외부에 의해 가해지는 요소와의 상호작용이자 환경상의 여러 세력에 작용하는 적용활동이라는 점에서⁵¹⁾ 법적 문제해결의 제도적 조건 마련과 함께 습관화된 문화적 관행에 대한 자각의 중요성을 정의의 차원에서 환기시킬 수 있게 한다.⁵²⁾ 그런 점에서 자신과 타인의 아르스에 대해 알고 그것을 성장시키려 하는 것은 법교육을 비롯하여 법학전문교육에서도 간과될 수 없는 조건이 된다.

IV. 결론을 같음하여- 삶의 예술이 되는 법교육

법사상사에서 아르스로서의 법이라는 기획은 고차법을 인식하기 위한 인간이성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실정법의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이념으로 제시된 바 있다. 아르스 개념은 우리가 발휘하고 있는 아르스가 아르스로서의 법의 기획이라는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자신의 방식에 대한 인식적 좌표를 제공해 준다. 법교육에서 아르스의 역할을 드러내는 것은 법적 문제해결을 위한 탐구의 조건을 형성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법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탐구를 필요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아예 무엇에 의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무언가를 새롭게 알아낸다고 해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조차 모르기 때문에 탐구가 원천적

50) J. 듀이, 송도선(역), 『인간 본성과 행위』, 공동체, 2006, 21-22면.

51) 위의 책, 같은 면.

52) 영은“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특정 행위들이나 예의, 반응의 특정한 형태, 말하는 특정한 방식에서의 사회정의”를 언급하면서, 습관적 행위의 의미와 함의에 대한 담론적 자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지배적인 문화적 관행의 요소가 문화적 습관 자체를 바꿈으로써 억압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문화적 습관의 변화는 개인의 자신의 개인적 습관을 깨닫고 변화시킬 때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영은 이것이 바로 문화혁명(cultural revolution)이라고 본다. I. M, 영, 김도균·조국(역), 『차이의 정치와 정의』, 모티브북, 2017, 329-330면.

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⁵³⁾ 하지만 법에서 아르스의 역할을 드러내게 되면 우리가 실제의 법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가 분명해지며, 찾고자 생각했던 이외의 것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르스를 훈련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면밀한 탐구의 조건을 갖춰 갈 수 있게 된다.

또한 과거의 아르스 개념이 이성에만 정초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고차법을 인식하기 위한 우리 인간의 탐구에서 감각과 지각, 감정 등이 이성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으로 활용되며 그것에의 활용이 비록 명확하게 언어화되지 않고 있더라도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암묵적 지식과 이것을 산출하는 능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능력은 인간 진화의 산물이기도 한데,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감지하는 것부터가 자연법적 요소에 대한 실마리를 더듬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 자연법이란 실정법에 대한 고차법으로서 어떤 가능성만을 암시하는 불확정적인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언제나 요원하고 미묘한 것이었지만, 인간을 과거로부터 이어져오는 연속적인 존재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인간들의 삶에 대한 회구를 법의 형태를 빌어 남겨진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보게 되면 공통된 유기체로서 생생한 삶의 경험에 감응하는 아르스에 의해 이루어진 법적 문제해결에는 자체로 고차법적인 요소가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법적 사안에 대한 감성적 능력의 역량의 훈련은 법교육에서 간단히 생략될 수 없는 것이다.

법교육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조심스럽게 검증되는 이 세심한 탐구의 과정 속에서 아르스를 개발하고, 법을 통해 보다 인간다운 삶을 향하는 우리의 성장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예술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기도 하다. 삶의 예술로서의 법교육은 아르스를 경유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미적·윤리적으로 세우고 자기 배려를 통해 인간으로써 자신의 삶을 예술적 완성으로 끌어올리는 존재의 미학으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을 열게 된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삶의 테크네, 삶의 아르스를 말할 때에는 삶을 잘 만들어가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었고, 이는 단순히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생활태도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테크네 개념을 경유하여 제시되는 아르스 개념은 내 삶을

53) 마이클 폴라니, 김정래(역), 『암묵적 영역』, 박영사, 2015, 17면.

만들고 공동체의 삶을 만들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삶의 예술로,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는 법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 삶의 질과 맺는 관계를 드러내어 준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법교육*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목 차

- I. 서론
- II.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법: 법교육 환경의 변화
 - 1.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법적 영향
 - 2.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법교육
- III. 법교육의 의미 재론
 - 1. 현재 법교육 관행상의 문제점
 - 2. 지식의 전달인가 역량의 교육인가
 - 3. 관점 전환의 시도
- IV. 결론을 대신하여

I. 서론

2008년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이는 시민교육 차원의 법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을 국가 공동체적으로 재인식하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동법 제1조는 그 목적에서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¹⁾

법교육이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서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사안들은, 그것을 인식하던

* 이 글은 2018년 제19회 한국법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발제를 위해 작성한 원고로, 추후 더욱 완성된 체계와 내용으로 보완할 예정에 이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법교육에 대한 적절한 논의를 위해서는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교육지원법」 제2조는 “법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고 개념정의 하고 있으며(제1호), 법교육을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지 않던 간에, 대부분 법적 구조로 설명이 가능하다. 법규범은 기본적으로 사회 각 주체들의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확보해 줌과 아울러, 분쟁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법규범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종의 기준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제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좀 더 구체적인 측면에서 법교육이 가지는 의미를 면밀하게 확정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다. 통념적으로 보자면, 법률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에게 그 사회경험 및 연령 수준에 맞는 쉬운 설명으로 법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법교육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시민교육의 구도 속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면, 과연 현재와 같은 법교육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법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면 국가 구성 주체인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법교육이 의도하는 법의식은 무엇인가?

법교육에 대한 이러한 의문에 추가하여, 소위 4차 산업혁명²⁾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현재 사회적 화두는 교육 전반의 변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혁신담론의 이면에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의사결정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평가 받는 인공지능은 과연 법에 관한 관념을 얼마만큼 변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시민교육 차원의 법교육이 견지해야 하는 방향성은 무엇인지를 가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향후 지속적이고 다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또는 그 알고리즘 활용의 일상화·보편화가 불러올 법규범적 측면의 변화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향후 법규범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가늠해 볼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상황을 전제로 법교육 방식과 내용상의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 무엇인지는 다소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물론 그간 우리나라의 법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화의 필요성이 있으며, 그러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2) 불가피하게 이 논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학술적 엄밀성에서 보자면 이 용어에 대해서 필자는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 용어는 이제 신기술로 인한 사회혁신을 지칭하는 뜻으로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II.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법: 법교육 환경의 변화

1.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법적 영향

기술적 발전은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은 변화시킨다. 이는 법규범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한 발전과정을 이행해 온 정보통신 기술은 현재의 수준만으로도 우리 일상의 상당부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과 신기술(emerging technologies)로 칭해지는 제반 과학기술 영역들의 융합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최근에는 사회구조의 혁신적 패러다임 전환까지 예견하는 분석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기술적 변화 맥락을 진지하게 고민토록 하는 중요 테마 중 하나는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그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순조로운 과정만을 거친 것은 아니다. 시류의 흐름에 따라 관심과 기대를 받기도 하는가하면, 또한 세간의 조롱거리로 취급받기도 했다(심우민, 2016: 44-46). 부흥기와 침체기를 거듭하던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들어 재차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간에 2016년 3월 이루어진 5차례의 바둑대국을 통해 급격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논리연산 및 데이터 검색의 수준을 넘어서서, 과거에는 인간만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학습과 이를 통한 자율적 알고리즘 (재)구축이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향후 실생활의 다양한 부분들을 변화 또는 혁신 시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규범 및 그 기반의 법리적 원리들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³⁾ 현 단계에서 예상되는 법규범적 변화에 관한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3) 필자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법규범에 대한 관념 변화를 법진화론적 측면에서 응답적법(responsive law)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심우민, 2017: 364 이하).

<표 1> 법제 영역별 인공지능 관련 주제

법제영역 구분	주요내용
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 등 인권의 문제(ex. 젠더/ 트랜스휴먼 단계, cf. 포스트휴먼) - 인간의 존엄(ex. 뉴럴링크) - 알고리즘을 통한 표현의 자유 인정여부 - 인간의 입헌주의와 인공지능의 입헌주의
행정 및 공공 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의 확장(정보제공 →자동화 행정행위) / 행정자동결정 - RegTech / AI법률서비스(cf. 스탠포드CodeX) -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드론 행정규제 - 소프트웨어 안전관리(통합 및 특별법 vs. 개별영역 법률) - Reverse Engineering 의무화 방안 - 인공지능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행위 규제(cf. 경쟁법적 접근 등)
지식재산권 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의 대규모 지식재산권 침해 - 인공지능 자체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cf. 일본)
개인정보보호 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 프로파일링의 증가 대응 필요 - 자동화된 동의방식 도입 - 식별 정보가 아닌 프라이버시의 법적 보호방안
민사 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에이전트와 인간의 합리성 격차 - 스마트계약(자동화)과 의사표시 - (SW)제조물책임
형사 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의 형벌능력(cf. 법인) - 인과관계 인정방식
노동 및 복지 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고용형태의 증가(ex. 플랫폼 노동) - 노동 시간 및 장소 규정의 변화 - 알고리즘 활용 관련 조세(로봇세) 및 기본소득(cf. 자동화 생산)

* 출처: 심우민, 2018b: 59-60.

법규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기보다는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식의 일환으로 항상 사후적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이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지능 및 그 알고리즘의 법규범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수준만으로도 논의할 수 있는 쟁점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어쩌면 현시점에서 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 논제들 또한 존재한다. 인공지능 및 그 알고리즘이 법규범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법적 판단의

자동화이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이제 일반 시민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물론 이는 이미 현재도 검색엔진을 통하여 법적 의문 사항들을 해소하고 있는 맥락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는 특정 개인의 문제해결에 관한 적극적인 별도의 노력 없이도, 해결책을 구하는 데 용이한 상황이 전개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인공지능을 통해 구성된 알고리즘이 사실상 법규범과 유사하게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행위규제는 단순히 법규범 설정을 통한 전통적인 행위규제와는 다소 다른 성격을 가진다. 단순하게 이야기 하자면, 과거 인위적인 행위규제 문제를 논할 때에는 주로 법규범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 그만이었지만, 향후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도 보이지 않는 인간행위의 제약요인으로 등장했다는 의미이다(심우민, 2016; 2017; 2018a). 예를 들어, 우리는 포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 주제선정이나 기사 배열은 인간의 가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⁴⁾

이상과 같은 두 가지의 접근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사고와 판단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존하게 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는 다소 난해할 수 있는 법적 판단에 관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측면에 주목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 인간의 판단과 행위가 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인공지능을 통한 법적판단의 효율성과 용이성

최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법률 및 판례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또는 리걸테크(Legal Tech.) 분야가 새로운 관심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는 이제까지 법정보학(legal informatics) 연구의 한

4)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8년 상반기에 한 포털사의 기사배열공론화위원회의 학계 추천 위원으로 참석한 바 있었다.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사배열(큐레이션) 알고리즘과 운영방식에 관한 논의는 매우 초기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시한 권고안 또한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다만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준 정립 필요성과 방식에 관한 아이디어들을 시사 받을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분야라고 할 수 있으나,⁵⁾ 법률 데이터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오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까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법률 데이터 활용은 다량의 데이터 집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을 활용하여 왔으며, 기술적 측면에서 다양한 한계를 인식하여 법률 및 판례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준의 논의가 주축을 이루어 왔다. 특히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과 법(Artificial Intelligence & Law) 연구자들은, 형식 논리학 진영의 통념과는 달리 법규범적 판단과 관련한 자료들은 상당부분 분류 기준을 정립하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단순한 논리적 연산 및 분석만으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반성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런데 최근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현재 인공지능 법률서비스의 가능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특히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하여 모종의 산업적 관점에서 급격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도 다수의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그 활용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외 주요한 리걸테크 기업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국내외 주요 리걸테크 기업

서비스 종류	업무영역 설명	기업	국가
법률 검색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사건 해결에 필요한 법률, 판례 등을 효율적으로 검색	인텔리콘(Intellicon)	한국
		주디카타(Judicata)	미국
		케이스텍스트(Casetext)	미국
		로스인텔리전스(ROSS)	미국
변호사 검색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상담 내용과 비용을 검토한 후 적합한 변호사를 추천	헬프미(Help me)	한국
		로앤컴퍼니(Law&Company)	한국
		렉수(Lexoo)	영국
		로부스(LawBooth)	미국
전자증거 개시	소송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당사자 간에 공개하는 전자증거개시 업무 수행	디스코(Disco)	미국
		로직컬(Logikcull)	미국
		블랙스톤 디스커버리	미국
		프론테오(Fronteo)	일본

5) 법학은 기본적으로 규칙(rule)에 관한 연구 분야이고, 법정보학은 이러한 규칙을 다루는 수단으로서의 도구(tool)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법정보학 연구자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Peter Seipel, 2004: 33).

법률 자문 및 전략 수립	과거 법률과 판례의 추이를 분석하여 입법 가능성과 판결 예측	렉스 마키나(Lex Machina) 피스컬노트(FiscalNote) 두낫 페이(DoNotPay)	미국 미국 미국
온라인 통합 법률 서비스	기업 및 자영업자, 개인을 대상으로한 법률문서 작성 지원 및 자문	로앤비(LAWnB) 법무부 생활법률지식서비스 리걸줌(Legalzoom) 로켓로이어(Rocket Lawyer)	한국 한국 미국 미국

*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8.

물론 이상에서 제시한 분야 이외에도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상화에서도 미국에 존재하는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기업만도 8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⁶⁾ 그런데 위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관련 기술 수준은,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법률적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사안을 분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료 검색 및 분석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인공지능 법률서비스가 방점을 두고 있는 주요 고객은 법률전문가들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 법률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로 인하여 변호사 활용 및 선임 비용이 저렴해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일상생활에 이러한 서비스와 기술이 미치는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것은 인공지능 법률서비스가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포털 검색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은 법적 문제와 마주하더라도 변호사나 법률전문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인공지능 법률서비스에 문의하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사안들은 이러한 단계에서 해소 및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온전한 수준을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법무부가 ‘AI 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지식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2세대 ‘대화형 생활법률지식 서비스’ 「버비」를 웹사이트⁷⁾와 ‘카카오톡’을 통해 2018년 3월부터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법무부, 2018).

아직까지 현재의 인공지능 법률서비스의 저변과 수준은 금명간 일반인들의 활발한 이용을 예견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현재의 검색서비스

6) 스탠포드 법정보화연구센터 사이트(<http://techindex.law.stanford.edu/>)에서는 인공지능의 법률 서비스 활용 영역을 Marketplace, Document Automation, Practice Management, Legal Research, Legal Education, Online Dispute Resolution, E-Discovery, Analytics Compliance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7) 「버비」 웹사이트(www.talk.laworder.go.kr)

와 유사하게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법을 바라보는 시민적 관념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단순한 법률 지식 또는 정보조차도 법률전문가나 법학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의 디지털 환경 수준에서도 이러한 정보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과거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법적 판단 영역은 점차 그 경계가 허물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결국 법률전문가 집단의 역할과 일반 시민들의 법에 대한 관념을 상당부분 바꿔 놓을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이제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만으로는 온전히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향후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법학교육 체계와 내용 변화를 고민하여, 단순 지식 정보 제공과 기계적 판단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기능과 역량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 지점은 바로 현재의 전문가 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재고하도록 요청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이 범규범을 바라보는 관점도 상당히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 판단은 매우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는 통상적 관념은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한 법률서비스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소 허물어질 수 있다. 법률전문가들의 법적 판단이 기계적 판단 또는 예측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범규범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 더 나아가서는 사건의 처리가 용이해 지면서 법률전문가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시각도 일정부분 달라질 것이다.⁸⁾ 이제는 전문가들의 권위에 의탁하지 않더라도 더욱 정확한 지식과 해법을 찾아내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법률서비스의 일상화·보편화는 단지 법률전문가들의 취업과 시장의 문제에만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근대사회 성립 이후 법적 판단의 자율성 기저에 존재하는 전문성의 기반을 흔들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8) 물론 이는 현재의 전문가 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이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는 상황을 상정한 이야기이다.

2)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행위 및 판단 제약성

법규범은 기본적으로 인간 행위의 규제와 연관성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은 규제에 관한 법률적 정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2호는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또는 법규범 등을 규제라고 부른다. 자유주의적 법의 지해가 정립된 이후 법규범은 인간의 행위를 외부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인위적 개입의 중심이 되어 왔다.

물론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요인들은 법규범을 제외하고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논해지는 도덕 및 윤리 등 사회규범도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Lawrence Lessig, 2009: 101이하). 자연적으로 생성된 시장도 인간의 행위와 판단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설계한 것들 중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즉 앞서 언급한 법규범과 같이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과 구성의지가 반영된 행위 제약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언급할 수 있는 것이 구조물 또는 아키텍처(architecture)다. 이에 관한 사례로는 과속방지턱이 대표적이다. 과속방지턱은 인간의 과속행위를 제약하기 위해 설계된 인공적인 구조물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상기해야 할 지점은 이러한 아키텍처에 기반한 행위 제약이 반드시 의도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기 위한 목적이 투영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를 이러한 인공물로서의 아키텍처가 가지는 규제적 성격을 ‘아키텍처 기반 규제(architectural regulation)’이라고 설명해 왔다.⁹⁾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논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어떠한가? 인공지능 및 그 알고리즘은 최초 누군가의 의도에 기반하여 설계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9) 필자는 이러한 아키텍처 기반 규제를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유동적인 속성에 주목하여 ‘알고리즘 기반 규제’로 언급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뇌와 뉴런의 구조를 모방한다는 견지에서 보면 최근 논해지고 있는 자연주의 윤리학 등의 맥락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아키텍처 또는 알고리즘의 새로운 자연법론의 단초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뇌과학적 논의와 연계된 자연주의 철학의 맥락에 대해서는 Paul Thagard, 김미선 역(2011). 뇌와 삶의 의미, 필로소픽 참조.

관련 서비스는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유용성을 제공해주는 수단이다. 특히 합리적 계산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은 별도의 수고를 들이지 않고서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유용함은 인간에게 자유(로움)를 선사해 주지만, 그에 상응하여 그러한 자유 또는 행위의 제약 또한 유발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응용되고 있는 현실적인 양태로서의 검색엔진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자.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검색이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검색 사이트를 통해 습득한다. 이 과정에서 검색엔진은 가장 일반적으로 검색 및 활용되는 지식정보들이 무엇인지를 학습하게 되고, 이에 근거하여 정보들에 순위와 순서를 매겨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이는 인공지능 검색 알고리즘이 구성 및 수정되어지는 개괄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회지배적인 지식과 정보는 더욱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그 변화의 가능성을 잃게 된다.¹⁰⁾

인공지능 및 그 알고리즘의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인간은 많은 부분 기계적 판단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전자적 형태의 계산기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인간은 아주 단순한 계산의 경우에도 계산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제는 보편화된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그러하며, 전화번호 암기의 사례가 그러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공지능을 외화된 사회적 정신(정신'(externalized social mind)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인석, 2012: 5). 즉 인간이 그의 뇌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외부적 수단에 의존하여 사고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와 판단의 제약은 법적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법적 판단은 본질적으로 가치와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다양성 또는 논쟁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법적 사안에 대한 판단 및 그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차이 또는 불일치가 결국에는 법적 판단 및 범규범의 변화를 추동하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기계적 판단에 더욱 의존하게 될수록 법적판단 또는 법리의 변화 가능성이 상실될 수 있다. 특히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법관념도 특정 가치 및 구조에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가치적·규범적 고착화는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순기

10) 이는 비단 알고리즘과 연관된 것은 아니고, 사회의 지배적인 통념이 내포된 데이터를 알고리즘이 학습하여 체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알고리즘이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는지의 문제는 인공지능 판단결과의 부당한 차별(인권침해) 문제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Federal Trade Commission, 2016;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6).

능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통합은 특정 집단 및 가치관의 사회 지배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법교육

1) 법교육에 대한 인공지능의 기여 가능성

앞서 인공지능 및 그 알고리즘의 법적 영향에 대해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들 중심의 법규범적 사고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유지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률전문가들의 방법론적 또는 직업적 자율성은 이제 기계적 판단으로 일부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행위 및 판단 제약적 성격은 사회의 지배적인 법적 관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사실 이러한 두 가지 양상은 종국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지배력 강화를 의미하는 맥락에서 있다. 이는 달리 말하여, 인간의 지배력보다 기계적 판단의 그것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법규범적 지배력, 그리고 이를 통한 가치 또는 법규범적 판단의 고착화를 방지하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그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순기능을 안정적으로 향유하게 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중심의 법학교육과 더불어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법규범적 의미형성에 대한 이해와 법규범 활용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학교 및 사회 법교육에서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법지식 전수 중심의 소극적 교육방식은 이제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반 시민들은 법에 관한 정확한 선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을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아도, 기계적 판단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지금도 실제 일반 시민들은 법률적 의문이나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 많은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일상화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을 교실에서 교사가 재차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법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그렇게 수집된 정보의 타당성과 정확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종국적으로 수중에 들어온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초

점을 두는 법교육이 필요하다.

법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용이하게 습득하기 어려운 시대의 법교육에서는 불가피하게 그러한 정보와 지식에 교육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과거의 이러한 환경에서 법에 관한 비판적 사고력이나 역량까지 시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었다면 가장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물론 더욱 교육의 본질에 가까웠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까지 시도하는 것은 무리였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종전까지는 이러한 역량에 대한 교육은 개인의 능력에 맡겨져 왔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및 인공지능 활용의 증가는 교육의 영역에서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교육이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2) 알고리즘 리터러시 교육으로서의 법교육

인공지능 시대의 법교육을 제대로 논하기 위해서는 인간 행위와 판단 제약요인으로서의 아키텍처 또는 알고리즘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고리즘과 같은 기술적 제약요인은 과거 법규범과 유사하게 인간을 규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물 등 아키텍처와는 달리, 이러한 알고리즘은 비록 보거나 만질 수 없지만 인간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들어감으로써 상당한 강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종의 암묵적이고 비가시적인 규율 권력 또는 수단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법교육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격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인터넷 등 네트워크 공간상의 사회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에서도 종래 법규범적 논의들도 비가시적이고 암묵적인 아키텍처에 기반한 규제에 대해 언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과거 인터넷 아키텍처의 성격에 비하여 좀 더 난해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인터넷 아키텍처에 비교해 보자면 좀 더 가변적이고 불확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반면, 판단결과 산출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진다는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알고리즘은 단지 소프트웨어적 언어 및 그 구조화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범규범 차원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특정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인간의 개입 없이) 알고리즘을 수정해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어떠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한 왜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¹¹⁾¹²⁾ 이러한 측면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블랙박스적 성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범규범적 판단상의 난점은 인류의 전통적 범규범 판단양식과는 다른 접근 및 컨센서스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³⁾ 특히 인과관계 판단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범규범적 사고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최근 기술적 차원에서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Explainable AI)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범규범적인 차원에서는 설명 요청권(right to explanation)¹⁴⁾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규범적 요청은 바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투명성, 보다 궁극적으로는 알고리즘에 대해 인간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일반론적 차원에서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교육적 관점에서 이러한 알고리즘 리터러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특정 문제해결을 위한 판단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인간의 물

11)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의 출시에 앞서 엔지니어들은 테스트 또는 실험 과정을 통하여 일부 파라미터 조정 등의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논의의 핵심을 그러한 인위적인 개입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는 관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12) 이는 법이론적으로 불확정성(indeterminacy)의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법학 연구문헌으로는 Jack M. Balkin, "The Path of Robotics Law", *California Law Review Circuit* 6, 2015이 있다. 물론 볼킨의 논의는 인공지능경망 기술의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기 보다는 다차원적인 데이터의 결합으로 불확정성이 증대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13) 국내외적으로 아직까지 인공지능의 이러한 속성에 관한 법이론적 논의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이와 유사한 문제점들에 관한 공감대는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문헌들로는 Frank Pasquale, 이시은(역), 『블랙박스 사회』(안티고네, 2016); Cathy O'Neil, 김정혜(역), 『대량살상 수학무기』(흐름출판, 2017) 등이 있다. 직접적으로 법적 판단상의 인공지능 활용이 발생시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최근 미국 법원에서 콤파스(Compas)라는 소프트웨어가 문제시 된 바 있었다. 본 판결의 문제점에 관해 명확히 하고 있는 사이트로는 <https://www.propublica.org/article/machine-bias-risk-assessments-in-criminal-sentencing> 을 참조할 것.

14) 설명요청권을 법적인 권리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현재 법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Bryce Goodman & Seth Flaxman, 2016; Sandra Wachter, Brent Mittelstadt & Luciano Floridi, 2017; Will Knight, 2017).

리적 행위를 제약하는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사고방식과 의사결정까지도 개입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외부적인 법규범과는 달리 더욱 직접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알고리즘의 규제적 성격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법규범적 측면에서 기계적 알고리즘의 가지는 한계와 활용 방식을 정확하게 습득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계적 판단결과로 제공되는 법적 판단의 결과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의 문제도 중요한 법교육의 화두로 등장할 것이다.

Ⅲ. 법교육의 의미 재론

1. 현재 법교육 관행상의 문제점

이상과 같은 인공지능 시대를 향한 법교육 환경의 변화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의 법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논의는 이중적인 고려사항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현재의 법교육 일반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에 기반해서 향후 법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아야 한다.

1) 현재의 법교육에 대한 의문

법학교육(legal education)과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이 가지는 형식적 수준의 의미 구분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 현장에서 상당부분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법학교육은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의미하고, 법교육은 일반 시민교육 차원의 역량 또는 소양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박성혁, 2006; 조우영, 2006; 전제철, 2010; 송성민, 2014).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의미 구분과는 달리, 양자가 가지는 실질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는 실제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 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법(률) 등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법, 사법, 사회법, 그리고 국제법 등에 관한 내용들을

나열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법과 정치」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은 분량상의 차이만 제외한다면 사실상 법과대학이나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전통적 법학입문 교과목인 「법학개론」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과거 법과대학 시스템에서 「법학개론」은 법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법학도 및 일반시민들에게는 법학의 전 체계를 조망함과 아울러, 기본적인 법률 개념들을 습득할 수 있는 과목이었다. 즉 이 교과목은 어디까지나 ‘법학교육’을 지향하는 것이었다.¹⁵⁾ 그렇다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법학교육에서 활용하고 있던 구조와 개념을 불가피하게 차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과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개념법학적인 법률용어들을 모두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법률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법적인 소양 및 역량을 기른다는 것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가? 이러한 의문은 아직까지 교육 현장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2) 사법판결학을 기반으로 하는 법학교육

전통적으로 법률전문가들은 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의 해석과 적용 문제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특정 법조문을 사례에 적용하여 당해 조문의 의미를 구체화 또는 확정하게 될 때, 당해 규정이 실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통적인 법학교육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실정법 규범과 원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한 논의, 즉 해석법학 또는 사법판결학을 추구해 왔다(심우민, 2012).

법철학적이 역사적인 연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법판결학을 중심으로 한 법학교육은 법률전문가들이 활용하는 법 규범과 원리가 왜 그렇게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 법률전문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있어야 할 법’이 아니라 ‘있는 법’이고, 결국 실천학문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법을 현실 사안에 적용하는 데 활용되는 법학방법론(해석방법론)이다(Karl Engisch, 2011; 한국법철학회, 2017). 이러한 법학방법론이 논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적 판단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

15) 물론 간혹 비법학도들에게도 「법학개론」 과목이 가르쳐지는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문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와 연계한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해 과목의 강의를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교양 수준에서의 실생활과 관련한 법률과목으로는 흔히 「생활과 법률」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과목들이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성인들을 상대로 한 법지식 전달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현실 속에서 매우 다종다기하게 발생하는 사안 판단의 복잡성을 감축시키는 체계화(systemization)의 맥락으로 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법학교육의 내용을 이루는 법지식은 실정법 규범 및 원리, 판례, 그리고 법률전문 직역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어 온 법학방법론의 내용들이 혼재되어 구성된 관념적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3) 법지식의 전달 중심의 법교육

「법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법교육은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법교육의 이상향을 기술해 놓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종의 교육적 책무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법교육의 현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학교육을 위한 법지식과 체계를 상당부분 원용하여 이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현장에서는 소위 생활법률을 중심으로 한 법률지식 전달 차원의 법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또한 현실에 마주치는 법적 사안에 대응하여 어떻게 행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 전달 수준의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법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하는 데 이러한 지식 및 체계의 전달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

2. 지식의 전달인가 역량의 교육인가

1) 법지식 중심 접근의 한계

법지식 전달 중심의 법교육, 특히 전통적 법학교육상의 그것을 원용한 법교육은 아무리 그것을 쉬운 용어로 피교육자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법교육이 기본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시민교육의 의미를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학교육을 이제

까지 사법판결, 즉 법적 판단의 결과(도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법학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법지식은 왜 그러한 판단이 타당한지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법지식과 원리 이면에 존재하는 다소 배경적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무신경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활용되는 직역 전문성과 연계되어 있는 법학방법론에 대한 이해는 더더욱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이 결과 중심적 법지식의 교육은 범규범이 가지는 의미에 관한 법실증주의적 사고방식을 더욱 확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 결국 전체 시민사회의 맥락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범규범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러한 법을 활용한다는 것이 어떠한 맥락과 함의를 가지는 것인지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권리를 주장 및 관철하는 도구로서 법을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현실적으로도 모든 사회적 쟁점들을 법을 통해 결정짓고 해소하려는 경향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현상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물론 사회 규범의 일종인 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또한 주장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현실 속에서의 범만능주의 경향은 안정적 수준을 넘어 현실 고착적이고 소통이 사라진 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재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Luc J. Wintgens, 2002: 13).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 법지식에 대한 전달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그러한 법지식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교육적 지향성을 명확히 하는 교육이다. 물론 그간 한국사회에서 법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뒷받침 해주는 「법교육지원법」까지 제정되었던 상황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정상우 외, 2015).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콘텐츠가 아직까지 온전한 수준으로 완비되어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추측컨대 이러한 상황은 향후 법교육 연구의 진행에 따라 점진적으로 현실적인 변화와 발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¹⁶⁾

16) 사실 이 글에서는 현재의 법교육 상황을 다소 비판적으로 평가하고는 있지만, 법교육 영역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2) 인공지능 시대와 법규범적 역량 교육

굳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법지식 중심의 법교육이 가지는 한계는 명확하다. 그러나 인공지능 및 그 알고리즘의 활용이 일상화되면 더욱더 지식보다는 역량 중심의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및 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법률 지식 및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용이해 진다는 점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지식을 답습하는 것은 준법교육의 차원에서는 일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궁극적인 법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규범의 시민 사회적 의미 이해와 이에 기반한 맥락적 활용 역량 제고하는 취지에는 부합하기 힘들다.

물론 기초적인 법지식이라든가 법적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인터넷 등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법지식이나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교육 중점이 변화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도처에 존재하는 법률 정보 및 지식 가운데 어떤 것들을 선택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경험해 나가면서, 그러한 경험을 일상생활에서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교육을 통해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적 관점에서 보자면 비법학 전공자인 교사들이 법학 지식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활용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타당한 방식일 수 있다.

3. 관점 전환의 시도

1) 전환의 필요성

미래 법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어쩌면 법률전문가 영역의 법학과 법학교육을 해체 및 재구성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법규범과 체계를 어떠한 발전 및 구성과정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체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등에 대한 분석과 재성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고민의 결과

들이 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유 및 공감될 때, 당초 시민교육적 차원의 법교육이 가지는 의미를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학방법론과 이를 통해 전수되어 오고 있는 법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분석 및 이해되어야 한다. 법학방법론은 범규범에 관한 실무 및 학문 영역의 고유성을 보여주는 자율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한 법적 판단은 간혹 일반 시민들의 정서적·상식적 판단과는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문 영역의 방법론적 자율성 귀결로서의 판단 결과를 어떻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¹⁷⁾ 특히 일반 시민의 입장들에게 법률전문가들의 방법론적 요소와 전제들을 모두 이해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¹⁸⁾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법지식의 전달은 더더욱 의미가 없다.

따라서 종래 범규범에 관한 실무와 학문 영역에 대한 논의에 대한 법교육적 차원의 분석에 더하여, 무엇을 법교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향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피교육자가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도처에 산재하는 법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에 초점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이는 교육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주장은 추상적인 이상향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법교육의 가치지향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 범규범을 바라보던 전통적 시각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2) 범규범에 관한 전통 관념의 전환 요청: 입법학적 관점의 투영

법학의 학술적 논의에서는 종래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립이 있어왔다. 즉 이는 현존하는 범규범 체계에 대한 인식 토대를 의미한다. 자연법론의 경우에는 실정법 이면의 고차법적 질서를 상정하여 실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범을 넘어서는 근원적 규범질서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에 의하면 실정법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범규범이 존재하며, 더 나아가서 실정법은 이러한 자연법적 질서를 반영한 것일수록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실증주의는 법전에

17) 근대법의 특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자율성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Roberto Unger, 1994: 67-68).

18) 물론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에 있어서도 법학방법론이라는 것이 기술적이고 도구적인 차원에서 전수될 뿐, 그러한 방법론 이면에 존재하는 연혁적, 가치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쓰여져 있는 법, 즉 실정법만이 법규범이라는 현실적인 시각의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은 당해 실정법이 법규범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강제성을 가지는 규범으로 한 사회에서 통용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자연법론이나 법실증주의는 모두 인간의 법규범 형성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심우민, 2010: 51-58).

현대사회에서는 가치 간 갈등이 과거보다 더욱 증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치 간 갈등은 다양한 사회적 조율 메커니즘을 거치면서 모종의 법규범적 내용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자연법론이나 법실증주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러한 규범적 귀결은 결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없다. 자연법론의 입장서는 포괄적 자연법적 규범의 원리 및 범주를 넘어서는 것만 아니라면 수긍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고, 법실증주의는 모종의 규범적 내용이 형식적으로 실정법에 포섭되기만 하면 더 이상 문제시되지 않는다. 이는 전적으로 사후적인 규범적 판단, 즉 사법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치간 갈등이 더욱 더 외부적으로 노정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법규범으로 정립된 특정 가치가 법규범을 통해 사후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보다는, 애초 자신이 상정하고 있는 규범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욱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자연법론이자 법실증주의적인 관점을 넘어서는 법형성에 관한 새로운 사고방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법판결학 또는 법해석학에 대비되는 입법학(立法學)이다. 입법학 연구의 역사는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물론 고전적 법학 논의에 있어 입법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보다 적극적인 법형성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일종의 학문 분과로서 관심이 투여된 것은 채 50여년이 되지 않는다. 주류적인 입법학에 관한 논의는 가치간 갈등이 전제된 상황 속에서 과학적 분석(사회과학방법론)을 기존 법학 논의와 접목하여,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한다는 측면에 상당히 매료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근대 과학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에 기반해 있는 것이며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기획이자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입법학에 대해 새롭게 개념정의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필자가 제시하는 입법학 관념은 당연한 출발지점으로 가치간 갈등, 달리 말하여 도덕적 불일치(disagreement)를 전제로 하고 있다.¹⁹⁾ 가치간 갈등을 과학

적 근거로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불일치 속에서도 법규범을 매개로 사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법학의 기본적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치학은 도덕적 불일치를 증진하는 역할을 하고, 법학은 그러한 불일치를 해소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법학, 특히 입법학의 소임은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일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함께 공존하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시민적 의지의 투영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러한 새로운 입법학적 관점이 법교육에 투영될 때, 사법 판결을 중심으로 형성된 법지식의 전수, 즉 법학교육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사법과 입법의 형식적 구분 속에서 입법의 영역에 한정하는 논의를 수행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법의 영역도 결국에는 고정된 실정법의 해석 및 적용과정에서 새로운 규범적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입법학적인 관점이 일정부분 투영될 수밖에 없다.²⁰⁾

궁극적으로 입법학적 접근방식에 착목한 법교육은 사회 내에 각기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체들이 자신의 도덕적 또는 규범적 가치를 법규범으로 구성해 나가는 방식과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본 취지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제까지 형성되어 온 기본적인 법률 개념이나 지식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교육은 불가능하고 또한 타당하지도 않다. 다만 그러한 법지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대전제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법교육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19) 현재 국내외의 입법학 연구 및 새로운 관점에서의 입법학에 대한 접근에 대한 내용은 심우민(2014). 입법학의 기본관점: 입법논증론의 함의와 응용. 서강대학교 출판부. pp. 25-70 참조. 이 책에서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직시하고, 그러한 불일치의 가능성들이 법 그 자체에 가급적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는 다학제적 학문분과”로 입법학에 대해 학술적인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20) 전형적으로 이를 보여주는 논의는 Stephen Breyer, 이국운·장철준 역(2016). 역동적 자유. 사회평론아카데미 참조.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차원적인 가치 갈등을 역동적 자유로 인식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법판결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볼 수 있다.

3) 법문화에 초점을 둔 법교육

앞서 현재 일반적인 법교육 관행이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점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이 정상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법지식 전달이 아닌 시민적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민적 역량이라는 것은 결국 법률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사법판결 등의 과정을 거쳐 법적 의미를 구성 또는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능동적 의미 관여를 통해 법적 의미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근대 입헌주의 국가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이념에서 보더라도 당연한 요청이다.

그런데 법의 이해와 활용에 관한 시민적 역량은 궁극적으로 당해 국가 공동체의 '법문화'와 상당한 연관성을 가진다. 법문화(legal culture)란 법과 법제도에 관한 시민의 태도, 신조, 가치관, 이상, 기대 등을 의미한다(김정오, 2006: 241-243). 근대법을 계수한 우리나라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서구의 자유주의 법체계 및 질서를 상당부분 계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바라보는 국가 구성원들의 행태, 의식 및 가치관 등이 서구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은 단순히 서구로부터 전수받거나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형성된 법지식을 피교육자들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그 취지를 온전히 달성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당해 법규범의 수범자인 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활용하는지에 관한 현실, 즉 법문화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 중국에서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시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사회이든 법에 관한 고유한 문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자유로운 사회이든 억압적인 사회이든 수범자인 시민들은 법규범이 가지는 형식적인 의미를 자기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유한 가치관과 행태들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시민적 법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법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 수준의 법교육, 소위 준법교육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교육되어지는 법규범의 가치와 내용이 시민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다른 가치와 내용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법은 그 본연의 사회적 가치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즉 국가는 사회질서유지와 사회통합이라는 미명하게 시민들에게 준법만을 강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법규범이 가지는 의미는 이러한 법문화적 배경 속에서 구성되어지는 것이다. 당해 법규범을 제정한 취지는 수범자들의 맥락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미

로 변모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범규범적 의미가 시민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고, 최종적인 법적 판단에 종사하는 법률전문가집단도 이러한 법적 의미를 자신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믿음 하에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²¹⁾ 결국 시민의 법문화는 현실적인 법적 의미 형성과 그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관련 범규범을 활용하는 역량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인공지능 및 소위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가 급격하게 확산되어가고 있다. 사실 이런 담론지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상 아직까지 인공지능 기술의 일상적 활용이 본격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신기술 담론에 사회가 몰두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의 문제점은 단순히 간과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은 사실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우리 주변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등에 관한 담론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너무나 급격한 변화를 상정하여, 교육 및 그 방식의 변화 요청을 무작정 추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의 활용이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기술 예측이 아니라 이미 현재 구현되어 있는 인공지능과 유사한 기술적 수단들의 활용 상황을 검토해보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포털 사이트들이다. 포털사이트는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의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검색 결과 및 순위를 보여주고,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는 신문기사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배열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포털사이트의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상황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fake news) 규제담론 및 댓글조작 사건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범규범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방식과 활용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들이 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로서도 많은 일반 시민들은 법률적인 문제가 발

21) 물론 법률전문가 법문화(professional legal culture)를 가진다. 이는 종종 시민대중의 법문화(popular legal culture)와 대비되어 설명되곤 한다(김정오, 2006: 242).

생하면 검색엔진들을 통해 관련 정보를 습득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제 법에 관한 지식과 정보는 도처에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그런 활용 방식과 역량은 단지 지식의 전수를 통해 계고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는 마치 법률전문가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을 기반으로 실무 경험을 쌓아야 온전한 소송 수행이 가능해 지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지식과 정보의 활용을 직접 경험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 범규범이 가지는 국가적·사회적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험이 중요하다.

물론 법교육의 지향점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한 무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 및 사회 법교육의 현실을 확인해 본다면, 분명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을 향한 변화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법학교육의 콘텐츠를 원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교육 고유의 새로운 콘텐츠들을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인석(2012). 로봇이 책임과 권한의 주체일 수 있는가. **철학논총**, 67(1), 3-21.
- 김정오(2006). **한국의 법문화**. 나남출판.
- 박성혁. (2006). 창간특집: 법교육의 현황과 전망; 법교육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발전 방향. **법교육연구**, 1(1), 53-71.
- 법무부(2018). 보도자료: 법무부, 손안의 인공지능(AI) 법률비서 2세대 「버비」 서비스 시작.
- 송성민. (2014). 대안적 법교육 패러다임의 제안-형성적 법교육의 의의와 효과. **법교육연구**, 9(1), 27-64.
- 심우민(2010). 입법평가와 입법논증: 연계 가능성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입법평가연구**, 3, 42-76.
- 심우민(2012). 입법학 연구와 입법평가: 법학과 사회과학 접목의 한계지점. **(연세대)법학연구**, 22(2), 211-239.
- 심우민(2014). **입법학의 기본관점: 입법논증론의 함의와 응용**. 서강대학교출판부.
- 심우민. (2016). 인공지능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 **법과 사회**, 53, 41-70.
- 심우민. (2017). 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 가능성: 입법 실무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과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법과 사회**, 56, 351-385.
- 심우민. (2018). 인공지능 시대의 입법학. **법학연구**, 29(2), 11-49.
- 심우민. (2018). 인공지능 기술과 IT 법체계: 법정보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12(1), 55-86.
- 전제철. (2010). 초중등 사회과 법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 **법교육연구**, 5(2), 133-158.
- 정상우 외(2015). **법교육지원법 개정 방향 및 내용 연구**. 법무부.
- 조우영. (2006). 학교에서의 준법교육의 타당성 검토. **법교육연구**, 1(2), 123-134.
- 한국법철학회(2017). **법학방법론**. 세창출판사.
-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A.I. 플러스 - 미래 사회에 지능을 더하다: 인공지능이 바꾸는 법률 서비스**.
- Goodman, B., & Flaxman, S. (2016). *European Union regulations on algorithmic decision-making and a "right to explanation"*. arXiv preprint.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2016), *Big Data: A Report on Algorithmic Systems, Opportunity, and Civil Right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 Federal Trade Commission. (2016). *Big data: A tool for inclusion or exclusion*. Understanding the Issues.
- Karl Engisch, 안범영·윤재왕 역(2011). **법학방법론**. 세창출판사.
- Lawrence Lessig, 김정오 역(2009). **코드 2.0**. 나남.

- Luc J. Wintgens(2002), *Legislation as an Object of Study of Legal Theory: Legisprudence*
Luc J. Wintgens(ed.). *Legisprudence: A New Theoretical Approach to Legislation*. Hart Publishing.
- Paul Thagard, 김미선 역(2011). *뇌와 삶의 의미*. 필로소픽.
- Seipel, P. (2004). IT Law and the Framework of Legal informatics. *Scandinavian Stud L*, 47, 31.
- Roberto Unger, 김정오 역(1994). *근대사회에서의 법: 사회이론의 비판을 위하여*. 삼영사.
- Merry, S. E. (1998). Law, culture, and cultural appropriation. *Yale JL & Human*, 10, 575.
- Wachter, S., Mittelstadt, B., & Floridi, L. (2017). Why a right to explanation of automated decision-making does not exist in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7(2), 76-99.
- Stephen Breyer, 이국운·장철준 역(2016). *역동적 자유*. 사회평론아카데미.
- Will Knight(2017). *The Dark Secret at the Heart of AI*. MIT Technology Review.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일본의 법교육*

- 재판원제도와 관련한 법교육을 중심으로 -

김대홍(UNIST 교수)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일본 법교육의 변화
 - 1. 일본 법교육의 개요
 - 2. 일본 법교육의 특징
 - 3. 일본 법교육의 과제
- III.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일본 법교육의 내용
 - 1. 법무성의 법교육교재
 - 2.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
- IV.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일본 법교육의 시사점
- V. 맺으며

I. 들어가며

일본에서는 1999년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설치와 함께 2001년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실로 2004년에 「재판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裁判員の参加する刑事裁判に関する法律, 平成16年法律第63号)(약칭: 재판원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¹⁾ 재판원제도는 일반국민 중에 선정된 재판원(裁判員)이 법률전문가인 재판관(裁判官)과 함께 중대범죄 형사재판의 사실의 인정은 물론 법령의 적용과 형의 양정에까지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심제와 참심제의 성격을 모두 지닌 일본 고유의 국민참여 재판제도로 평가된다. 1999년의 일본 사법제도개혁은 국민 개개인이 통치객

* 작성 중인 원고로 본문과 각주에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먼저 양해를 구하며, 인용의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1) 재판원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대홍, 김대홍, 일본 배심법에서 재판원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사법참여 관점에서 입법 과정 및 법적 쟁점의 검토, 『법과사회』(제58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8 참조.

체의식에서 탈피해서 자율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진 통치주체로서 서로 협력하면서 법의 지배 하에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구축에 참여하여 일본의 풍부한 창조성과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을 그 기본이념과 방향으로 설정하였다.²⁾ 따라서 재판원제도는 일본 사법제도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사법제도개혁의 특징 중의 하나는 재판원제도와 함께 법교육을 구상하였다는 점이다. 즉, 사법의 국민적 기반확립 방안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설계하였고, 그러한 국민적 기반확립을 위한 조건정비로 알기 쉬운 사법의 실현, 사법교육의 충실, 사법에 관한 정보공개를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과 비슷한 한국에서도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논의되었다. 한국에서는 2004년 말 대법원의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사법개혁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그 결실의 하나로 2007년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약칭: 국민참여재판법)이 제정되어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³⁾ 한국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 이외에도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일본과 달리 법교육을 국민의 사법참여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구상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우리와 달리 사법의 국민적 기반확립이라는 기치 하에 법교육을 재판원제도와 연계하여 설계했던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법교육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사법제도개혁에 따라 일본에서 일었던 법교육의 변화와 구체적 법교육의 내용, 그리고 그 시사점을 차례차례 살펴보기로 한다.

2) 司法制度改革審議會, 「司法制度改革審議會意見書-21世紀の日本を支える司法制度-」, 2001, 3頁.
3) 국민참여재판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안경환·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2005; 한인섭, 한국의 배심원재판-준비과정과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토한다, 『서울대학교 法學』(제50권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참조.

II.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일본 법교육의 변화

1. 일본 법교육의 개요

일본에 법교육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78년으로 전하고, 1993년에 본격적으로 미국 법교육의 교육과정, 단원, 수업수준 등이 소개되었다.⁴⁾ 법교육이란 넓게 정의하면, 법과 사법에 관한 교육전반을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일본에서의 법교육은 이러한 연혁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법교육법(Law-Related Education Act of 1978)⁵⁾의 Law-Related Education에서 유래하는 용어를 가리킨다. 1990대 초반 이후 일본의 법교육은 미국 법교육의 소개를 시작으로 사회과교육 연구자, 초·중등교육 교원 등에 의해서 연구·실시되어 온 법교육과 변호사, 법무사 등의 법률전문가나 그 단체에 의해서 실시되어 온 법교육의 두 갈래로 이루어졌다.⁶⁾

이러한 일본의 법교육에 일대 변혁의 개기를 마련한 것이 2001년 본격 논의가 시작되었던 사법제도개혁이었다.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2003년 7월 29일 일본 법무성에서는 일본 학교교육 등에서의 법 및 사법(司法)에 관한 학습기회를 확충시키기 위하여 그에 관련한 교육에 대해 조사·연구·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교육연구회(法教育研究會)를 발족시켰다.⁷⁾ 국민의 사법교육에 관

4) 安藤輝次, 『アメリカ社会科の新傾向：法教育』, 『教育学論集』(第4号), 大阪市立大学文学部教育学研究室, 1978年, 45-57頁; 江口勇治, 『社会科における「法教育」の重要性—アメリカ社会科における「法教育」の検討を通して』, 『社会科教育研究』(第68号), 日本社会科教育学会, 1993, 1-17頁. (橋本康弘, 『法教育』の現状と課題—官と民の取組に着目して—, 『総合法律支援論叢』(第2号), 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 2013, 1頁에서 재인용)

5) 미국의 법교육법은 법률비전문가에게 법, 사법절차, 사법체계 및 그의 기초가 된 핵심적 원칙과 가치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을 제동하는 것이다. 미국 교육부의 규정은 이에 추가하여 학생들이 복잡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법과 법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법교육법은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한 풍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괄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민주주의 제도, 다원주의, 법의 지배로 정의되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 가치를 함양하도록 한다는 공통목표를 공유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법교육법은 민주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극적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시민은 자식이 속한 사회를 이해하고 살아가며 긍정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시민을 의미한다. (https://www.americanbar.org/groups/public_education/resources/law_related_education_network.html)

6) 江澤和雄, 『わが国における法教育の現状と当面する課題』, 『レファレンス』(平成26年1月号), 国立国会図書館, 2014, 37-8頁.

7) 法教育研究会에 관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oj.go.jp/shingi1/kanbou_houkyo_index.html>.

해서는 사법제도개혁심의회(司法制度改革審議會) 의견서에 따르면 “학교교육 등에서의 사법에 관한 학습기회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고, 사법제도개혁의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었다.⁸⁾ 그에 따라 법교육연구회가 설치되었고, 학교현장의 실정이나 요구를 적확하게 파악하고, 폭넓은 관계자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법조관계자는 물론 학자, 교육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여러 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하여 실천적인 교육의 전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법교육연구회(法教育研究會)의 출범 이후 사법제도개혁 추진에 따라 재판원 제도 및 종합법률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속속 제정되었고,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성 등에서 다양한 대책의 마련을 준비하였는데, 그러한 대처의 기초가 되는 것이 법교육의 보급·발전으로 판단하였다. 2004년 11월 법교육연구회로부터 제출된 보고서에는 “새로운 시대의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의 역군을 양성하기 위하여”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는데,⁹⁾ 이는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이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이며, 누구나 스스로 법과 사법의 버팀목이 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재판원제도를 비롯한 각종 사법제도개혁의 성과가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에 대하여 법교육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시책에 힘을 필요로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 법무성에서는, 2005년 5월 법교육추진협의회(法教育推進協議會)를 발족시켰다.¹⁰⁾ 법교육추진협의회는 법교육연구회의 회원을 중심으로 새로이 많은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하는 체제를 만들어 정부대책의 구체화 활동을 계획한 것으로, 향후 법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교육연구회 보고서의 취지를 감안하면서 학교교육에 있어 법교육의 실천, 교육관계자·법조관계인에 의한 법교육에 관한 대처, 재판원제도를 소재로 한 법교육교재의 작성, 기타 법교육 연구·실천·보급 방법 등을 검토과제로 제시하였다.¹¹⁾ 이 같은 법교육추진

8) 司法制度改革審議會 「意見書」에 관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kantei.go.jp/jp/sihouseido/report-dex.html>>.

9) 法教育研究會 「報告書」에 관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oj.go.jp/shingi1/kanbou_houkyo_houkoku.html>.

10) 法教育推進協議會에 관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oj.go.jp/shingi1/kanbou_houkyo_kyougikai_index.html>.

11) 이에 관해서는 法教育推進協議會, 「第1回會議議事概要」(平成17年 5月 25日) 참조: <<http://www.moj.go.jp/content/000001623.pdf>>.

협의회의 검토결과 법무성에서는 2009년 「사법(私法) 분야 교육의 충실과 법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교재례의 작성에 대하여」라는 법교육교재 작성지침을 제시하였다.¹²⁾ 그리고 그 구체적인 체적인 내용과 실천방법을 담아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교생 각각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교재를 공개하였다.¹³⁾

법교육연구회나 법교육추진협의회와 같은 법무성의 주도에 따른 법교육의 추진과 연계하여 문부과학성에서도 법교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사법제도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관계부처 연락회의가 설치되었고, 그에 따라 문부과학성을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도 법교육의 추진을 계획한 것이다. 문부과학성의 법교육 추진은 문부과학대신의 자문기관으로 문부과학성 내에 설치된 중앙교육심의회(中央教育審議會)의 교육과정부회(教育課程部會)에서 주로 담당하였다. 중앙교육심의회의 본격적인 논의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05년은 법무성 법교육연구회의 최종보고서 나온 해이고, 법교육연구회의 후신인 법교육추진협의회가 출범한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앙교육심의회의 법교육 추진은 이후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으로 연결되었다.¹⁴⁾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대해서는 이전 법무성 법교육연구회의 논의에 문부과학성 관계자도 참여한 영향에 따라 법교육연구회에서의 논의가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개정 학습지도요령에서는 학교교육의 법교육으로 법과 규칙, 국민의 사법참여를 비롯한 법에 관한 학습충실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과·공민과(公民科)의 법교육에서 행복·정의·공정이라는 법적 가치에 관련된 내용, 견해나 사고와 같은 법적 원칙에 관련된 내용, 재판원제도와 같은 법적 참여에 관련 내용, 그리고 삼권의 상호관계와 같은 법적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 법교육의 관련 내용으로 새롭게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사법제

12) 法教育推進協議会, 「私法分野教育の充実と法教育の更なる発展に向けて」(平成21年5月15日): <<http://www.moj.go.jp/content/000112183.pdf>>; 法教育推進協議会, 「小学生を対象とした法教育教材例の作成について」(平成21年8月26日): <<http://www.moj.go.jp/content/000112184.pdf>>.

13) 法教育推進協議会, 「小学生を対象とした教材」: <http://www.moj.go.jp/housei/shihouseido/housei10_00036.html>; 法教育推進協議会, 「中学生を対象とした教材」: <http://www.moj.go.jp/housei/shihouseido/housei10_00037.html>; 法教育推進協議会, 「高校生を対象とした教材」: <http://www.moj.go.jp/housei/shihouseido/housei10_00038.html>.

14)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中央教育審議會, 「幼稚園、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及び特別支援学校の学習指導要領等の改善について(答申)」, 2008, <http://www.mext.go.jp/a_menu/shotou/new-cs/information/1290361.htm>; 中央教育審議會, 「幼稚園、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及び特別支援学校の学習指導要領等の改善について(答申)」, 2016,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0/toushin/1380731.htm>.

도개혁의 흐름과 관련하여 사회·경제 시스템 방식의 변화 속에서 사회형성의 주체로서 학생의 양성에 관한 교육내용으로 법교육의 내용이 논의되었고, 사회·공민과에 법과 금융 등에 관한 내용의 충실이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학생의 역량육성을 중시하면서 분쟁을 해결하고 처리하거나, 자신의 권리·이해 등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논의되었는데, 이 역시 법교육과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이와 같은 범무성이나 문무과학성 주도의 법교육 이외에 최고재판소나 일본 변호사연합회(日本弁護士連合會)에서도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법교육을 준비하였다. 최고재판소에서는 재판원제도의 실시에 따라 재판원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후보자에게는 재판원제도의 개요와 재판원의 직무에 관한 책자 등을 송부함과 동시에 명단 등재자용 콜센터의 개설 및 각 재판소에서의 전화대응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재판원에 대한 선임절차기일 호출장 송부 시에는 재판원제도에 관해서 보다 상세히 해설한 팸플릿 등을 동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선임절차당일은 각 재판소에서 적절하게 사퇴사유의 설명을 하는 등 선임절차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재판원의 부담경감이라는 관점을 고려한 설명과 대응 방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¹⁶⁾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는 이미 1990년 초반부터 법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사법제도개혁을 계기로 법교육을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면서 출장교육 등의 실시와 함께 다음과 같은 법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법교육의 목표는 개인이 존중되는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을 육성하는 것으로, 이는 아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의 사회과의 목표인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가·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한 공민적 자질의 양성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단순히 사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법의 의의 및 역할이나 기본적인 가치와 제도에 관한 지식을 응용하고 분쟁해결과 법과정에 참여하는 기능과 함께 법의 이념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자세를 익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에 관한 법교육의 검토와 그 보급에 주력한다고 하였다.¹⁷⁾

15) 橋本康弘, 「法教育」の現状と課題—官と民の取組に着目して—, 『総合法律支援論叢』(第2号), 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 2013, 4頁.

16) 国会参議院法務委員会, 「第189回 会議録」(第13号), 平成27年5月26日, 6頁.

17) 日本弁護士連合会, 「弁護士白書 2010年版: 時代を担う法教育」, 2010, 38-40頁.

2. 일본 법교육의 특색

2001년에 발표된 일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에 의하면 21세기 일본사회에서 국민은 그간의 통치객체의식에 따른 국가에의 과도한 의존체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공공의식을 함양하고, 공공적 사안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국민주권에 의거하여 통치구조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법의 분야에서도 국민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면서 널리 그 운용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것을 기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사법에 참가하는 장면에서 법률전문가인 법조와 상호 신뢰관계 아래에서 충분하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취하면서 협동하는 것과 함께 적극적으로 법조인과 풍부한 의사소통의 장을 형성·유지하면서 국민 스스로가 국민을 위한 사법을 뒷받침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에서는 사법을 일반국민에게 알기 쉽게 하는 것, 사법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 그리고 사법에 관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사법의 국민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 등의 조건정비를 제시하였다.¹⁸⁾

그리고 사법교육의 충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학교교육 등에서 사법에 관한 학습기회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에 따른 교육관계자와 법조관계자의 적극적 역할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법과 사법제도는 본래는 법률전문가 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사법참여의 확충에 따라 국민이 사법의 여러 영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따른 부담을 받아들인다는 의식개혁도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사법의 구조나 기능에 관한 국민의 학습기회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에는 교육관계자뿐만 아니라, 법조관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¹⁹⁾

이처럼 일본에서 사법제도개혁과 함께 추진된 법교육은 국민의 사법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교육의 개념에 있어서도 종래의 법교육과는 다른 개념 설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법교육연구회에서는 법교육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법과 사법제도 및 그 기초가 된 가치를 이해하고, 법적 사고

18) 司法制度改革審議會, 「司法制度改革審議會意見書-21世紀の日本を支える司法制度-」, 2001, 101頁.

19) 司法制度改革審議會, 「司法制度改革審議會意見書-21世紀の日本を支える司法制度-」, 2001, 112頁.

방식을 익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특히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법교육은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 등과는 달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일본의 법교육은 법조문과 법제도를 외우는 지식형 교육이 아닌, 법이나 규칙의 배경에 있는 가치관과 사법제도의 기능, 의의를 생각하는 ‘사고형’ 교육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회참여형’ 교육임에 큰 특색이 있다고 하였다.²⁰⁾

이처럼 일본에서 사법제도개혁과 함께 법교육이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는 우선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행정개혁이나 규제완화의 영향을 들 수 있다. 행정개혁이나 규제완화는 행정에 의한 과잉의 사전규제를 재검토하여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활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렇지만 규제완화 등이 진행되어 갈수록, 국민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자유로운 활동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어 그러한 분쟁을 법에 근거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필요가 생긴다. 사법제도개혁은 이처럼 법에 근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러한 개혁은 국민적 기반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자각하며 국민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지하는 법과 사법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해야 함이 요청되었고, 국민 스스로 사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사법에 관한 학습기회의 확충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²¹⁾

여기에 국민 사법참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원제도의 시행에 따라 중·고교생에 대한 법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재판원법은 2004년에 제정되었고, 2009년부터 시행예정이었기 때문에 당시 몇 년 후면 재판원의 유자격자가 되는 중·고교생에 대한 법교육이 긴급한 과제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판원제도는 일반국민이 재판원으로 재판관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형이나 무기형을 포함한 중대한 형사사건의 사실인정이나 양형판단에 국민의 건전한 사회상식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그 성격상 국민의 관심과 의욕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이 재판원으로 선정되었을 때 당장 필요한 지식을 주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판원제도에 대한 이해와 주체적 참여태도가 중·고등학교 시기부터 길러질 필요가

20) 法教育研究会, 法教育研究会「報告書」:我が国における法教育の普及・発展を目指して-新たな時代の自由かつ公正な社会の担い手をはぐくむために-, 2004, 2頁.

21) 法教育研究会, 法教育研究会「報告書」:我が国における法教育の普及・発展を目指して-新たな時代の自由かつ公正な社会の担い手をはぐくむために-, 2004, 2-3頁.

있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²²⁾

이처럼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국민의 사법참여와 재판원제도의 시행은 법교육에 대한 기존의 일본에서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사회가 행정에 의한 사전규제로부터 사법에 의한 사후구제에 크게 방향을 바꾸는 가운데, 특히 장래의 사회를 담당하는 학생들에게 법교육이 지향하는 지식이나 기능, 태도 형성을 키우는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에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개인이 존중되는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는 민주정치와 기본권 존중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국헌법에 의해서 요청되는 사회로, 그러한 사회는 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인 이상 법은 입헌주의, 개인의 존중, 자유 및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와 원칙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법제도개혁 이전의 사회과교육의 법교육은 그러한 가치와 원칙과의 연계를 의식하지 않고 실제로 있는 법률과 법제도의 지식면의 교육으로 일관한 결과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로는 국민을 규제하는 것, 혹은 기껏 국민을 보호할 것에 그쳤다는 반성이 있었다. 따라서 국민이 법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여기에는 세세한 법지식을 주입하는 것보다 법의 기초에 있는 가치와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중시하고 법적 사고 및 법적 참여를 익히는 것이 법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²³⁾

3. 일본 법교육의 과제

일본에서 2001년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재판원법이 2004년 제정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었고, 법교육에서도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법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한국현장에서 법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1년 도쿄도(東京都) 내의 1,474개 학교(도(都) 내의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23개 구(區) 내의 공립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61개 학교에서 응답을 해 왔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4분의 3에 해당하는 44개 학교에서 법교육수업의 실시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법교육의 의의를 잘 모르겠다”, “법교육을 맡을 인원이 없다”, “법조인들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 “재정적 기반이 없다” 등을 들었다. 그리고

22) 江澤和雄, 学校教育と「法教育」, 『レファレンス』(平成17年10月号), 国立国会図書館, 2005, 94頁.

23) 日本弁護士連合会, 「弁護士白書 2010年版: 時代を担う法教育」, 2010, 38-40頁.

통상의 수업으로 충분하므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학교도 적지 않았고, 향후에도 법교육수업의 예정이 없다고 답변한 학교 또한 적지 않았다.²⁴⁾

법교육을 맡은 인원에 대해서는 법교육수업 실시의 기본적인 주체는 역시 학교와 학교의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양성을 둘러싼 상황이 녹록치 않음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 교육직원면허법시행규칙(教育職員免許法施行規則:昭和二十九年文部省令第二十六号)에 의하면,²⁵⁾ 교원면허의 취득에 있어 대학·단기대학에서 일본국헌법의 2단위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2단위의 취득으로 헌법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공민과의 교원면허취득에 있어서도 교육직원면허법시행규칙(教育職員免許法施行規則:昭和二十九年文部省令第二十六号)의하면,²⁶⁾ 교과에 관한 과목으로 법학의 이수에 요구되는 최저취득학점은 1단위인데, 그것만으로는 법교육수업 실시에 충분한 자질을 함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²⁷⁾

이와 함께 법률전문가와 교육현장의 진정한 정보교환, 연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률전문가는 시민에게 익숙한 법률분쟁에 관여하고 있고, 여러 법적 문제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법교육에 긴요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가 그러한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는 것은 법률전문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교육현장에 있어서는 교원이 주체적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법률전문가가 그를 지원·조언하는 구조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교원과 법률전문가 사이의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교육과 법학교육의 유기적인 결합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²⁸⁾

법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법교육의 내용, 방법

24) 法教育推進協議会, 「第29回会議議事録」(平成24年6月20日), 20-2頁.

25) 第六十六條の六 免許法別表第一備考第四号に規定する文部科学省令で定める科目の単位は、日本国憲法二単位、体育二単位、外国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二単位及び情報機器の操作二単位とする。(http://elaws.e-gov.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9M50000080026&openerCode=1#430)

26) 第五條 免許法別表第一に規定する高等学校教諭の普通免許状の授与を受ける場合の教科に関する科目の単位の修得方法は、次の表の第一欄に掲げる免許教科の種類に応じ、第二欄に掲げる科目について、それぞれ一単位以上計二十単位を修得するものとする。(http://elaws.e-gov.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9M50000080026&openerCode=1#16)

27) 江澤和雄, わが国における法教育の現状と当面する課題, 『レファレンス』(平成26年1月号), 国立国会図書館, 2014, 59-60頁.

28) 江澤和雄, わが国における法教育の現状と当面する課題, 『レファレンス』(平成26年1月号), 国立国会図書館, 2014, 40-60頁.

을 둘러싸고,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다루는 방법, 법과 법제도에 관한 사고방식, 범형성 과정에의 참여방법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이에 앞서 법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대책의 강구가 무엇보다 요청되고 있다. 학습자에게 학습의욕이 없으면 교육효과가 오르지 않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교육수업에서 다루는 소재에 대해서 학생과 직접 관련된 교칙, 학생에게 익숙한 스포츠의 규칙 등 학생의 흥미·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춘 법교육교재와 수업의 개발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원 스스로에게도 법의 폭넓은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법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익힘으로써, 법적 능력을 높이고 법적 지식을 풍부하게 할 방향성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²⁹⁾

사실 법교육에 대한 관심의 고취, 충분한 법교육 인원의 양성, 교육현장과 법률전문가의 연계, 적절한 법교육교재의 개발 등과 같은 문제는 2004년 법교육연구회의 보고서에서 이미 예견되어 왔던 바이기도 하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법교육을 보급시키기 위한 향후의 과제로 법교육 중요성의 주지, 학교교육에 있어서 법교육과 관계자에 대한 기대, 학교교육에 있어서 법교육과 가정지역사회, 직장과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³⁰⁾ 그렇지만 현재 일본 법교육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그에 관한 지적은 법교육연구회의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던 과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재판원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5년이라는 준비기간을 두었고, 그를 법교육과도 연계시키는 세심한 구상을 하였다. 그러한 준비에 따라 법교육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널리 실시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교육의 실시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다.

29) 江澤和雄, わが国における法教育の現状と当面する課題, 『レファレンス』(平成26年1月号), 国立国会図書館, 2014, 60-2頁.

30)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法教育研究会, 法教育研究会「報告書」:我が国における法教育の普及・発展を目指して-新たな時代の自由かつ公正な社会の担い手をはぐくむために-, 2004, 23-33頁 참조.

Ⅲ.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일본 법교육의 내용

일본 법교육에서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법무성과 문부과학성을 들 수 있다. 법무성의 경우 법교육연구회에서 2004년 법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시방법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교재를 시안적으로 작성하였고, 법교육연구회의 후신인 법교육추진협의회에서는 2015년 그를 다시 개정하였다. 문부과학성의 경우에는 중앙교육협의회에서 사법제도개혁을 반영한 2008·2009년 학습지도요령을 공개하였고, 이후 그를 다시 개정한 2017년 학습지도요령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법무성의 법교육교재 및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에 대해서 재판원제도와 관련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법무성의 법교육교재

법교육연구회에서 작성한 2004년 법교육교재는 중학교 사회과 공민적 분야에서의 위치하는 것으로 중학교 사회과 공민적 분야에서 법교육을 실시할 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네 영역을 들어 교재작성회의를 개최한 다음, 영역별로 교재 작성 그룹을 조직하여 수업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교재의 개발을 목표로 한 것이다. 네 영역은 ① 규칙 만들기, ② 사법(私法)과 소비자 보호, ③ 헌법의 의의, ④ 사법(司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서로 독립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과 같이 상호유기적 관련성을 갖고 있다. 우선 ① 규칙 만들기에서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방식의 고찰을 통해서 사회집단 안에서 규칙(법)이 발생하는 필연성을 학습하고, 다음으로 ② 사법(私法)과 소비자 보호에서는 경제사회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 고찰을 통해서 사적 자치의 원칙을 학습하고, ③ 헌법의 의의에서는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 등의 가치에 관한 고찰을 통해서 헌법의 의미를 학습하고, 마지막으로, ④ 사법(司法)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해결방법의 고찰을 통해서 법에 근거한 재판의 의의를 학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순서에 의하면 규칙(법)이 발생한 필연성의 학습에서 시작하여 그 법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학습하고, 마지막으로 법에 의한 분쟁해결의 의의를 학습하는 흐름을 갖게 되는 것이다.³¹⁾

(1) 법교육연구회 작성 2004년 법교육교재

법교육연구회에서 2004년에 작성한 법교육교재에서 재판원제도와 관련한 법교육은 ④ 사법(司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사법(司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³²⁾

제1. 「사법」의 단원설정 취지

1. 법교육에 있어서 「사법」의 학습필요성

“사법”의 단원은 “사법은 법에 근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고, 규칙위반에 대처함으로써 법질서의 유지·형성을 도모하는 것임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모든 당사자를 대등한 지위에 놓고 공평한 제3자가 적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한 규칙에 근거하여 판단을 한다는 재판의 특질에 대해서 실감을 가지고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교재는 법·규칙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규칙위반에 대처하는 재판의 기능에 대해서 재판절차의 일부를 모의체험을 통해서 학습시킴으로써, 재판이 공정한 절차에서 이성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사법」에 관한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의 기술

(1) 학습지도요령의 내용

사법에 대해서 요령에서는, 대항목 “(3) 현대의 민주정치와 앞으로의 사회”의 중항목 “나. 민주 정치와 정치참여”에 “법에 근거하는 공정한 재판의 보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시키는”이라는 기술이 보인다. 이에 대해서 해설은 “「법에 근거하는 공정한 재판 보장」에 대해서는, (중략) 법에 근거하는 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인권이 지켜지고 있을 것,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과 법에 의한 재판이 헌법상 보장된 것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

31) 法教育研究会, 法教育研究会 「報告書」: 我が国における法教育の普及・発展を目指して—新たな時代の自由かつ公正な社会の担い手をはぐくむために—, 2004, 17-19頁.

32) 法教育研究会, 法教育研究会 「報告書」: 我が国における法教育の普及・発展を目指して—新たな時代の自由かつ公正な社会の担い手をはぐくむために—, 2004, 103-118頁.

을 의미한다. 이 때 추상적인 이해가 되지 않도록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등의 구체적인 기능을 통해서 이해시키는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여 재판의 기본적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수업에서는 "조사나 견학" 등의 활동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학습지도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요령에서는 선택교과로서의 "사회"에 대해서 "학생의 특성 등 다양한 학습활동이 전개할 수 있도록 (중략) 견학·조사, 과제학습, 자유연구적인 학습, 작업적·체험적인 학습, 보충적인 학습, 발전적인 학습 등의 학습활동을 각 학교에서 적절히 고려하여 시행"이라고 되어 있어 "사법"의 학습에 있어서도, 발전적인 전개나 활동적인 학습을 실시하는 등 학교와 학생의 특색에 따른 학습지도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교과서의 기술

교과서에서 "사법"은 "국가의 정치"라는 대항목에 위치하면서 국회, 내각, 재판소의 순으로 기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한 권력기관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교과서 중에는 기술의 대부분을 "삼권분립과 사법권의 독립", "위헌입법심사권"에 할애하는 것도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을 채용하면서, "사법"의 페이지의 대부분을 "사회생활과 법",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재판과 인권보장" 등의 기술에 충당하여 사법의 목적과 역할을 이해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도 보인다. 또한 변호사회 등에 의한 모의재판의 지도나 강연 의뢰, 또 재판 방청의 방법이 기술된 것 등도 있고, 체험적 활동 등 다양한 학습지도를 상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모두 사법을 학생의 친숙한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방법이며, 이 외에도 재판소, 검찰청에서 모의재판의 지도나 강연, 또는 재판의 방청과 체험활동 등 다양한 학습지원을 한다는 점에서도 수업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사법」 학습의 내용과 그 이해

"사법"에 관한 학습에서는 분쟁이나 규칙위반이 일어났을 경우 그 내용에 입각해서 해결하는 과정을 교재화하고 있다. 이 교재는 재판 당사자에 의한 주장 등과 재판관에 의한 판단과정이 수업의 중심이 된다. 학생은 사례 중에서 법적

문제를 발견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법을 적용해서 그 내용에 입각해서 해결을 생각하게 된다. 이들 일련의 학습에 의해서 재판제도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제2. 단원

대항목: (3) 현대의 민주정치와 앞으로의 사회

중항목: 나. 민주정치와 정치참여

1. 소단원 「사법」(3교시)의 구성

제1교시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제2교시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기”

제3교시 “민사재판과의 비교를 통해서 형사재판의 특징을 생각하기”

2. 단원의 목적

- ① 다양한 분쟁해결의 방법과 비교하며, 재판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높인다.
- ② 구체적인 분쟁사례 속에서 법적 문제를 발견하고, 분쟁의 원인과 쟁점을 분석·평가하여 그 내용에 따른 해결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한다.
- ③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법이나 규칙 위반에 대한 대처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한다.
- ④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시켜 법에 근거하는 공정한 재판의 구조나 기능에 대해서 이해한다.

3. 단원의 위치

“사법”의 단원은 필수교과인 중학교 사회과 공민적 분야에서 실시한다. 또한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교과로서의 “사회”와 종합학습시간에도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많은 중학교에서 사회과 공민적 분야에서 사법학습에 충당되는 시간은 3~4시간 정도로 추정된다.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사법”의 학습을 3시간의 구성으로 하여 사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법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택교과로서의 “사회”와 종합학습시간에서 사법에 관한

학습을 전개시킬 수 있도록 모의재판 등의 실시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4. 단원의 지도계획

(1) 「사법」의 개요

가. 제1교시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제1교시 수업에서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는가”라는 주제 아래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제3자를 세우면서 당사자끼리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나, 정당한 절차 하에서 제3자가 공정하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학습한다. 구체적으로는 흔히 볼 수 있는 친구끼리의 다툼을 들고 다툼 당사자가 친구와 함께 그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워크시트를 이용하여 학습한다.

실제 학습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워크시트에 기록된, “친구끼리의 다툼”을 읽고 분쟁의 내용을 이해한다.
-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제3자를 중간에 세우면서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그룹으로 나누어 다툼의 당사자, 제3자인 친구의 입장에 서서 분쟁해결을 목표로 한다.
- 분쟁이 해결되었는지 여부를 발표한다.
- 당사자 간에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절차에서 공정한 제3자가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재판제도(민사)의 의의를 배운다. 이 때 재판(민사)에 의한 분쟁해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배운다.

나. 제2교시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기”

제2교시 수업에서는 민사재판을 상정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기”라는 주제 아래 처음에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마지막에는 재판관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를 상정한 사례를 들고 각각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떤 주장이 제기되는지를 생각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전제로 한 판결내용을 워크시트에 기입한다.

실제 학습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 교통사고를 상정한 사례를 읽고 분쟁의 내용을 이해한다.
-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민사재판의 특징과 이 분쟁에 적용되는 법률(민법

제709조)을 확인한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장 내용을 생각한다.
- 교통사고 가해자의 입장에 서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감쇄하는 주장 내용을 생각한다.
- 재판관의 입장에 서서 판결내용을 생각한다.
- 민사재판의 역할을 정리한다.

다. 제3교시 “민사재판과의 비교를 통해서 형사재판의 특징을 생각하기”

제3교시 수업에서는 “민사재판과 비교를 통해서 형사재판의 특징을 생각하기”라는 주제 아래 민사재판이 사람들 사이의 사적(私的) 분쟁을 다루는 반면 형사재판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공익적 사안에 관한 재판이며, 민사재판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형사 재판에 재판원제도가 도입되는 것의 의의에 대해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해사건을 상정한 사례를 들고, 사건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재판관, 검찰관, 피고인, 변호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정리하는 동시에 형사재판의 특징 등을 생각하고 워크시트에 기입한다.

실제 학습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전철에서의 상해 사건”을 읽고 형사책임에 대해서 생각한다.
- 형사재판이 열리기까지의 절차를 정리한다.
- 민사재판과 비교하며 형사재판의 특징을 정리한다.
- 형사재판의 중요한 원칙을 생각한다.
- 재판관의 입장에서 판결을 생각한다.
- 재판원제도가 도입되는 것의 의의를 생각한다.

(2) 법교육추진협의회 작성 2015년 법교육교재

법교육추진협의회에서는 2015년에 이전 법교육연구회에서 작성하였던 법교육교재를 개정하였다.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부내용을 개정한 것인데, 「사법(司法)」에서 재판원제도와 관련해서는 교육내용에 큰 변화가 있었다. 「사법(司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³³⁾

33) 法教育推進協議會, 「法教育推進協議會(中学生向け法教育教材作成部会)作成教材」, 2015, 86-115頁.

제1. 단원설정의 취지

1. 법교육에 있어서 「사법」의 학습필요성

“사법”의 단원은 “사법은 법에 근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고, 규칙위반에 대처함으로써 법질서의 유지·형성을 도모하는 것임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모든 당사자를 대등한 지위에 놓고 공평한 제3자가 적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한 규칙에 근거하여 판단을 한다는 재판의 특질에 대해서 실감을 가지고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교재는 법·규칙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규칙위반에 대처하는 재판의 기능에 대해서 재판절차의 일부를 모의체험을 통해서 학습시킴으로써, 재판이 공정한 절차에서 이성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사법」에 관한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의 기술

① 학습지도요령의 내용

“사법”에 대해서 학습지도요령(사회과 공민적 분야)에서는 대항목 “(3) 우리와 정치”의 중항목 “나. 민주정치와 정치참여”에 “법에 근거하는 공정한 재판의 보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해시키는”이라는 기술이 보인다. 이에 대해서 해설은 “법에 근거하는 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가 지켜지고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과 법에 의한 재판이 헌법상 보장된 것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추상적인 이해가 되지 않도록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등의 구체적인 기능을 통해서 이해시키는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여 재판의 기본적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수업에서는 “조사나 견학” 등의 활동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학습지도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교과서의 기술

교과서에서 “사법”은 “국가의 정치”라는 대항목에 위치하면서 국회, 내각, 재판소의 순으로 기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한 권력기관으

로 위치하기 때문에 교과서 중에는 기술의 대부분을 “삼권분립”과 “사법권의 독립”, “위헌입법심사권”에 할애하는 것도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을 채용하면서, “사법”의 페이지의 대부분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재판과 인권보장”, “재판원제도” 등의 기술에 충당하여 사법의 목적과 역할을 이해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도 보인다. 또한 변호사회 등에 의한 모의재판의 지도나 재판 방청의 방법이 기술된 것 등도 있고, 체험적 활동 등 다양한 학습지도를 상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모두 사법을 학생의 친숙한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방법이며, 이 외에도 재판소, 검찰청에서 모의재판의 지도나 강연, 또는 재판의 방청과 체험활동 등 다양한 학습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이들도 수업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사법」 학습의 내용과 그 이해

“사법”에 관한 학습에서는 분쟁이나 규칙위반이 일어났을 경우 그 내용에 입각해서 해결하는 과정을 교재화하고 있다. 이 교재는 재판 당사자에 의한 주장 등과 재판관에 의한 판단과정이 수업의 중심이 된다. 학생은 사례 중에서 법적 문제를 발견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법을 적용해서 그 내용에 입각해서 해결을 생각하게 된다. 이들 일련의 학습에 의해서 재판제도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제2. 단원

대항목: (3) 우리와 정치

중항목: 나. 민주정치와 정치참여

1. 단원의 구성

제1교시: “일상의 분쟁해결과 민사재판”

제2교시: “민사재판과의 비교에서 본 형사재판”

제3교시: “재판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2. 단원의 목표

- ① 다양한 분쟁해결의 방법과 비교하며, 재판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높인다.
- ② 구체적인 분쟁사례 속에서 법적 문제를 발견하고, 분쟁의 원인과 쟁점을 분석·평가하여 그 내용에 따른 해결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한다.
- ③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법이나 규칙위반에 대한 대처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한다.
- ④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으면서 법에 근거하는 공정한 재판의 구조나 기능에 대해서 이해한다.

3. 단원의 위치

“사법”의 단원은, 중학교 사회과 공민적 분야에서 실시한다. 또한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학습시간에도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많은 중학교에서 사회과 공민적 분야에서 사법학습에 충당되는 시간은 3~4시간 정도로 추정된다.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사법”의 학습을 3시간의 구성으로 하여 사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법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합학습시간에 사법에 관한 학습을 전개시킬 수 있도록 모의재판 등의 실시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4. 단원의 지도계획

① 「사법」의 개요

- 가. 제1교시 “일상의 분쟁해결과 민사재판”
- 나. 제2교시 “민사재판과의 비교에서 본 형사재판”
- 다. 제3교시 “재판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제3교시 수업에서는 “재판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기”라는 주제 아래 재판원재판이 형사재판의 일종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재판원재판에서 재판원으로 공정한 견해와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재판원재판의 상정 사례를 들어 사실인정을 생각하고, 재판원재판에 있어 재판원의 역할을 워크시트에 기입한다.

실제 학습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 ① 재판원의 참여재판과 참여하지 않는 재판사진 등을 비교하고, 재판원재판

의 목적을 알게 된다.

- ② 재판원재판의 사례를 분류함으로써 재판원재판의 특색을 정리한다.
- ③ 재판원이 실시하는 사실인정을 생각한다.
- ④ 재판원으로서 재판원재판에서 주의해야 할 것을 생각한다.

자료 3. 재판원재판의 사례

현주건조물등방화 피고사건 :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한 뒤, 자신이 누구에게나 필요하지 않은 인간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살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형무소에 수용되거나 하면, 고민하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무처의 창고를 방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원이 3명 있는 건물에 골판지 판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여 건조물이 불에 타서 망가지게 했습니다.

살인 피고사건 :

피고인은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수입이 없어지고, 예금이 줄어가는 것에 불안을 느끼며 노숙자 될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는 정도라면 차라리 살해한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살의를 가지고 어머니를 사망케 했습니다.

살인 피고사건 :

피고인은 중병에 걸려 가족에게도 감염시키고 있다고 고민하게 되면서 자살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홀로 남겨두면 고생을 시키겠다는 생각에 억지로 동반자살하기로 결심하고 아내를 사망케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사건 :

피고인은 술기운을 띤 상태에서 일반승용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적색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무시했습니다. 시속 140킬로미터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왼쪽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의 일반승용자동차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의 동승자에게는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영리의 목적으로 프랑스의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할 때, 각성제 약 1895.73 그램이 혼입된 수용액 3병을 여행가방에 숨기고 수하물로 맡겨 항공기에 싣게 했습니다. 일본 공항에서 이 여행가방을 항공기에서 옮겨서 들여오면서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검색장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강도치상 피고사건:

현금함에서 현금을 훔치려고 한 피고인은, 순찰 중인 피해자가 말을 걸자 도주하면서 체포를 면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전치 약 3개월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해치사 피고사건:

피고인은 몸의 마비 때문에 와병 중인 아내에게 헌신적인 간병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한 식사를 아내가 싫어한 것 등에 화가 나서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혀서 사망케 했습니다.

2.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

문부과학성에서는 주로 법무성에서 실시하는 재판원제도의 의의와 법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교원연수와의 협력, 교원자격증 갱신강습을 활용한 학습지도요령의 법교육의 주지·홍보 등을 해왔다. 문부과학성에 설치된 중앙교육심의회에서는 재판원법 제정 이후 2008·2009년 학습지도요령을 공개하였고, 최근에는 2030년의 일본사회에 대비한 2017년 학습지도요령을 제시하였다. 2008·2009년 학습지도요령은 이전의 1998년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여 법에 관련된 학습의 충실을 도모함으로써 법교육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현대사회를 파악하는 견해나 생각의 기초로서 대립과 합의, 효율과 공정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나 사법(私法)에서 계약의 중요성을 다룬 것,

34) 江澤和雄, わが国における法教育の現状と当面する課題, 『レファレンス』(平成26年1月号), 国立国会図書館, 2014, 40頁.

고등학교 학습요령에서 법의 지배, 법이나 규범의 의의 및 역할, 사법(司法)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해를 제시한 것,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사법(私法)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1) 중앙교육심의회 2008·2009년 학습지도요령

중앙교육심의회 2008·2009년 학습지도요령은 제3기 및 제4기 중앙교육심의회에서의 검토를 거쳐 2007년 11월 그간의 중앙교육심의회 교육과정정부회의 심의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사회, 지리역사, 공민과 관련된 학습지도요령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⁵⁾

8. 각교과·과목 등의 내용

(2) 소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② 사회, 지리역사, 공민

(i) 개선의 기본방침

사회과 지리 역사과, 공민과에서는 그 과제를 근거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통해서 사회적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사회적인 견해나 생각을 성장시키는 것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도모한다.

○ 사회적 현상에 관한 기초적·기본적인 지식, 개념이나 기능을 확실히 습득케 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능력이나 과제를 탐구하는 능력을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각 학교단계의 특징에 따라서 학습해야 할 지식·개념의 명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을 활용한 지도나 통계 등 각종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읽는 것, 사회적 현상의 의미·의의를 해석하고 현상의 특색 및 현상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도모한다.

○ 우리나라 및 세계의 성립과 지역구성, 오늘의 사회경제 시스템, 다양한 전통과 문화, 종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토와 역사에 대한 애정을 품고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35) 中央教育審議會, 「幼稚園、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及び特別支援学校の学習指導要領等の改善について(答申)」, 2008, 79-82頁.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등 공공적인 일에 스스로 참여하는 자질과 능력을 육성하는 것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도모한다.

(ii) 개선의 구체적 사항

(초등학교)

○ 생활과 학습을 토대로 아동발달의 단계별로 지역사회와 우리나라 국토, 역사 등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깊게 하는 사회적인 견해나 생각을 기르면서 배운 지식, 개념과 기능 등을 활용하고 보다 좋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하는 자질과 능력의 기초를 기르는 것을 중시하고 개선을 도모한다.

이 때 작업적·체험적 학습이나 문제해결적인 학습을 더욱 충실히 함으로써 학습이나 생활의 기반이 되는 지식·기능을 습득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들을 활용하고 관찰·조사하거나 각종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읽거나 한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며 비교·관련·종합하여 재구성하는 학습이나 생각한 것을 자신의 말로 요약 전달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이 깊어지는 학습의 충실을 도모한다.

다.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규칙이나 법 및 경제에 관한 기초가 되는 내용의 충실을 도모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고도 정보화의 진전을 감안하면서 학습의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한다는 관점에서부터 개선을 도모한다.

(중학교)

○ 초등학교 사회과 학습을 토대로 지리적 분야, 역사적 분야, 공민적 분야의 세 분야 구성은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와 세계지리의 지리와 역사, 법과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기초적·기본적인 지식, 개념이나 기능을 습득하고, 사회적 현상의 의미·의의를 해석하고 학습하며, 현상의 특색 및 현상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학습 등을 통해서 사회적인 견해나 생각을 기르는 것을 더욱 중시하고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다양한 전통과 문화, 종교에 관한 학습을 중시하고 개선을 도모한다. 각 분야에서는 각각의 특성과 상호 관련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을 도모한다.

다. 공민적 분야에 대해서는 현대사회의 이해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보다 좋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하는 자질과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문화의 역할을 이해

시키는 학습, 규칙이나 통화의 역할 등을 통해서 정치, 경제에 대한 견해나 생각의 기초를 더욱 키우는 학습, 납세자로서의 자각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사회차원에서 환경문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보장과 재정문제 등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학습을 중시하고 내용을 구성한다. 이 때 습득한 개념을 활용하고 여러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거나 현상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거나 논의 등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심화시키는 것을 중시한다.

(고등학교)

○ 중학교 사회과 학습을 토대로 각 과목의 특질과 상호관련성을 감안하면서 습득한 지식, 개념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세계와 일본의 역사적 사상과 지리적 현상, 현대사회의 여러 현상에 대해서 고찰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기를 통해서 사회적 현상에 대한 견해나 생각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나 삶에 대한 자각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중시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을 도모한다.

나. 공민과에 대해서는 더 나은 사회의 형성에 스스로 참여하는 자질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각 과목의 전문적 지식, 개념과 이론 및 윤리적인 가치와 선현의 사고방식 등에 대해서 이해하는 동시에 그것을 실마리로 각 과목의 특징에 따라서 거론된 과제들을 고찰하고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견해나 생각, 인간 본연의 자세, 생활방식에 대한 자각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중시하고 개선을 도모한다.

- “현대사회”에 대해서는 윤리, 사회, 문화, 정치, 법, 경제에 관련된 현대사회의 여러 과제를 거론하며 인간 본연의 자세, 생활방식에 대한 학습, 논의 등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설명하거나 논술하는 등 과제 추구적인 학습을 더욱 중시한다.

- “정치·경제”에 대해서는 습득한 지식, 개념과 이론 등을 활용하고, 과제를 추구하는 학습을 한층 더 충실히 하면서 정치와 경제에 대한 견해나 생각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세계화와 규제완화의 진전, 사법(司法)의 역할 증대 등에 대응하고 법과 금융 등에 관한 내용의 충실을 도모한다.

(2) 중앙교육심의회 2017년 학습지도요령

중앙교육심의회 2017년 학습지도요령은 2014년 11월 문부과학대신으로부터 초·중등교육에서의 교육과정기준 등의 방식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교육과정기획 특별부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사회, 지리역사, 공민과 관련된 학습지도요령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⁶⁾

제2장 각 교과·과목 등의 내용 검토

2. 사회, 지리역사, 공민

(1) 현행 학습지도요령의 성과 및 과제를 토대로 한 사회과, 지리역사과, 공민과 목표의 기본방향

① 현행 학습지도요령의 성과와 과제

○ 사회과, 지리역사과, 공민과에서는 사회적 현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며, 사회적인 견해나 생각을 성장시키는 것 등에 중점을 두고 개선의 목표로 삼아 왔다. 한편 주체적으로 사회의 형성에 참여하려는 태도나 자료에서 읽은 정보를 토대로 사회적 현상의 특색과 의미 등을 비교하거나 관련지어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고 표현하는 능력의 육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인 견해나 생각에 대해서는 그 전체상이 불명확하고, 그것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정착하는 데 이르지 못한 점, 근현대에 관한 학습의 정착상황이 낮은 경향에 있는 점, 과제를 추구하거나 해결하는 활동을 도입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도 지적되고 있다.

○ 이러한 과제를 토대로 하고 앞으로의 시대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시야에 확보하여 사회과, 지리역사과, 공민과에서는 사회와의 관계를 의식하고 과제를 추구하거나 해결하는 활동을 충실히 하고, 지식과 사고력 등을 기반으로 사회의 기본방향이나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선택·판단하는 능력, 자국의 동향과 글로벌 동향을 횡단적·상호적으로 파악하고 현대적 과제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능력,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의 관점에서 지구규모의 여러 과제와 지역과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등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

36) 中央教育審議會, 「幼稚園、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及び特別支援学校の学習指導要領等の改善について(答申)」, 2016.

을 길러가는 것이 요구된다.

② 과제를 토대로 한 사회과, 지리역사과, 공민과 목표의 기본방향

○ 이를 바탕으로 사회과, 지리역사과, 공민과의 교육목표는 종전 목표의 취지를 감안하여 “공민으로서의 자질·능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자질·능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식·기능”,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 “배움을 향하는 힘·인간성 등”의 세 개의 기둥으로 제시하여 정리한다.

이 때 고등학교 지리역사과, 공민과에서는 넓은 시야에서, 글로벌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가 및 사회의 유능한 형성자에게 필요한 공민으로서의 자질·능력을, 초·중학교 사회과에서는 그 기초를 각각 육성할 필요가 있다.

○ 자질과 능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지식·기능”은 사회적 현상 등에 관련된 이해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식과 사회적 현상 등에 대해서 조사하는 기능으로,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현상 등의 의미와 의의, 특색과 상호관련을 고찰하는 능력, 사회에 나타나는 과제를 파악하고 그의 해결을 위한 구상하는 능력이나, 고찰한 것이나 구상한 것을 설명하는 능력, 그것들을 바탕으로 논의하는 능력으로, 또한 “배움을 향하는 힘, 인간성 등”에 대해서는 주체적으로 학습하는 태도와 다면적·다각적인 고찰과 깊은 이해를 통해서 함양되는 자각과 애정 등으로, 각각 교종(校種)의 단계나 분야·과목별 내용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개선사항

i) 과목구성의 재검토

(공민과의 과목구성)

○ 공민과의 과목구성을 검토하여 가정과, 정보과와 종합탐구시간 등과 연계해서 현대사회의 여러 과제를 파악·고찰하고, 선택·판단하기 위한 단서가 되는 개념과 이론을 동서고금의 지식축적을 바탕으로 습득하는 동시에 그것들을 활용하고 자립한 주체로서 타인과 협동하고 국가·사회의 형성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향해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공통필수과목으로서의 “공공(公共)”을 설치하고 선택이수과목으로 “윤리” 및 “정치·경제”를 설치한다. 이

때 현행 선택필이수과목 “현대사회”에 대해서는 과목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공통필수이수 과목인 “공공”에 대해서는 과목목표 기본방향에서 제시된 자질·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세 가지 대항목으로 구성한다.

• 제1은 자립한 주체는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협동에 의해서 국가나 사회 등 공공적인 공간을 만드는 주체임을 학습함과 동시에 동서고금의 선인의 대응, 지혜 등을 바탕으로 사회에 참여할 때의 선택·판단하기 위한 단서가 되는 개념과 이론을, 또한 공공적인 공간에서의 기본적 원리(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을 이해하고 이후의 대항목의 학습에 연결하는 것이 적당하다.

• 제2는 초·중학교 사회과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기반으로 제1에서 익힌 자질·능력을 활용하여 현실사회의 여러 과제를 정치적 주체, 경제적 주체, 법적 주체, 다양한 정보의 발신·수신 주체로서 스스로 찾아내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고찰, 구상하는 학습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 때 예를 들면 정치참여, 직업선택, 재판제도와 사법참여, 정보윤리와 같은 각 주체 특유의 소재를 다루고, 지도의 목적을 명확히 한 후에 각 주체의 상호 유기적인 관련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재정과 세금,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다양한 계약 등의 소재를 다루는 것이 적당하다.

또한 이들 주체가 되는 개인을 지지하는 가족·가정이나 지역 등에 있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자립된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것의 의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 제3은 전 두 가지 학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국가·사회, 국제사회 만들기를 향해서 여러 과제의 해결을 위해 구상하는 능력, 합의형성이나 사회 참여를 염두에 두고 구상한 것의 타당성과 효과, 실현가능성 등을 지표로 논의하는 능력 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현실사회의 여러 과제, 예를 들면 공공적인 장소 만들거나 안전을 위한 지역의 활성화, 수익과 부담의 균형, 세대간의 조화가 잡힌 사회보장, 문화와 종교의 다양성, 국제평화, 국제경제 격차의 시정과 국제협력 등을 탐구하는 학습을 하는 구성하는 것이 적당하다.

또한 이를 발전적으로 학습하는 선택이수과목으로 “윤리”, “정치·경제”를 규

정한다.

ii) 교육내용의 재검토

○ 사회에 나타나는 과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한 구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현행 학습지도요령에서 충실히 전통·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이해를 계속 심화하고, 미래로 이어지는 현대적인 과제에 입각한 교육내용의 재검토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주권자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과로서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에 따른 재정과 세금, 사회보장, 고용, 노동 및 금융 등의 과제에 대한 대응에도 유의한 정치참여, 저출산·고령화 등에 의한 지역사회의 변화 등을 고려한 교육내용의 재검토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공민적 분야에서는 방재정보의 발신·활용에 관한 지도, 정보화 등 지식기반 사회화에 의한 산업이나 사회의 구조적 변화, 그 속에서 기업에 관한 취급, 선거권 연령 인하에 따른 정치참여 등에 관한 지도를 충실히 하는 등의 개선을 실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법무성의 법교육교재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을 정리하면, 법무성의 법교육교재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의 구성에 맞추어 재판원제도를 포함한 법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상하였고,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은 그를 다시 반영하여 과목구성과 교육내용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법교육연구회의 법교육교재 중 “규칙 만들기”의 내용이 학습지도요령의 “효율과 공정”의 판단기준으로, “헌법의 의의”의 내용이 학습지도요령의 법의 지배와 법의 의의 및 역할로, “사법”의 내용이 학습지도요령의 사법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해 및 국민의 사법참여와 재판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내용으로 연결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³⁷⁾

일본에서는 이처럼 재판원법의 제정과 함께 그와 연계한 법교육이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원제도의 시행에 따라 법교육교재의 내용 역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무성의 2004년 법교육교재의 경우에는 시안으로 작성된 측면을 고려해야겠지만, 재판원제도에 관해서 수업의 마무리

37) 橋本康弘, 「法教育」の現状と課題—官と民の取組に着目して—, 『総合法律支援論叢』(第2号), 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 2013, 5-6頁,

리 단계에서 소개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그렇지만 2015년 법교육 교재의 경우에는 그간의 재판원제도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충실한 교육내용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판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기”라는 별도의 교시를 두고, 재판원재판과 기존 재판과의 차이, 재판원재판의 사례와 특색, 재판원의 사실인정, 재판원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학습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살인사건이나 방화사건, 강도치상사건, 각성제단속법 위반사건 등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재판원재판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성년이 된 후에 실제 담당하게 될 재판원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현실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IV.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일본 법교육의 시사점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사법제도개혁의 핵심으로 국민의 사법참여가 논의되었고, 그 성과물로 국민참여재판법과 재판원법이 각각 제정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사법의 국민적 기반확립을 위한 조건정비로 사법교육의 충실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재판원제도와 연계시킨 구체적인 법교육 내용을 구상하였다. 법무부의 법교육교재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은 이러한 결과를 반영된 것으로 상호관련성 하에 법 관련 교육내용이나 과목 구성을 기획·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재판원제도의 시행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재판원제도와 관련한 법교육내용이 보다 확대되었고,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재판원법 시행 이전에 이미 국민의 사법참여를 경험한 바가 있었다. 1928년부터 1928년부터 1943년까지 시행되었던 배심법(陪審法)으로 당시 여러 제약요인에 따라 실제 성과는 미비하였지만, 그 시행착오는 재판원제도의 설계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재판원법의 제정과 시행에 5년이라는 시차를 둔 것도 그러한 경험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5년은 법교육과정과 법교육내용의 개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재판원으로 선정되었을 때 당장 필요한 지식을 주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재판원으로 사법절차에 적절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판원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주체적 참여태도가 중·고등학교 시기부터 길러질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시간

까지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법교육을 지식형 교육이 아닌 '사고형' 교육과 '사회참여형' 교육으로 다시 개념 지은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일본 법교육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 법교육에 대한 관심의 저조와 법교육 인원의 부족, 교육현장과 법률전문가의 연계결여 등은 충실한 법교육의 실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이외에도 일본의 법교육에 대해서는 국민의 사법참여의 주체로서 자리매김 짓는 데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기 있다. 사법개혁심의회 의견서에서는 사법참여의 확충에 따라 국민이 사법의 여러 영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을 받아들인다는 의식개혁이 요구된다고 하였고, 법교육연구회의 보고서에서도 국민 스스로 사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마음가짐을 길러야 된다고 하였다. 재판원법에서도 제1조에서 국민 중에서 선임된 재판원이 재판관과 함께 형사소송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신뢰향상에 이바지하는 점에 비추어 재판원법을 제정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은 국민이 사법의 주체라는 표면적인 통치주체의식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의무가 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점, 더 나가서는 재판원법의 제정과 법교육에 있어 시민이 형사사법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재판원법의 제정과정에서 종래 직업법관에 의한 형사재판을 반성적으로 고려하고 국민 스스로 주권자로서 재판을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지만, 종국적으로 설정된 재판원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이해증진과 그 신뢰향상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원제도에 관한 법교육을 구상할 때에도 형사사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의 의의에 대해서 국가형벌권의 행사장인 형사사법에 있어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의 통제는 어떠한 것으로 구상되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점을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재판정이 단순한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 인식되어서 안 되는 점이 재판원제도 교육뿐만 아니라, 일본 법교육 전반에 걸쳐 인권과 민주주의, 인권과 국민주권의 관계에 관한 재검토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³⁸⁾

38) 渡邊弘, 法教育について-裁判員制度教育の検討をとおして, 『活水論文集』(第51集), 活水女子大学, 2008, 42-4頁.

또한 과거의 원죄(冤罪), 오관 사례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재판원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수형자와 검찰관·수사기관·행형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압도적인 격차를 인식한다면 진술거부권과 무죄추정과 같은 형사절차의 제원리와 제원칙의 강조가 여전히 유효한 것이므로, 법교육에 있어서도 국가 대 개인의 대항관계라는 형사사법 기본구조의 검토를 제외하는 구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이 형사사법절차에 주체적 지위로 참여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국가권력에 대한 주체적 지위의 확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그 의의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원법의 시행과 함께 제시된 국민의 통치주체로서의 인식이 그에 따른 부담의 수인의 강조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은 물론, 형사사법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라 형사절차에 있어 피의자·피고인의 주체적 지위의 확립이라는 시점에서 재판원의 위상이 자리매김 되어야 함이 재판원제도의 시행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법교육에서도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⁹⁾

V. 맺으며

지금까지 일본에서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법교육의 변화와 과제, 구체적인 법교육의 내용,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법 제정 당시 헌법적합성이라는 문제라는 난관을 해결하고, 국민참여재판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재판원법 시행 이전 배심법의 시행 경험이 있었던 일본과 달리 국민참여재판 자체의 도입 자체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후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법교육 연구·개발이나 학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제6조·제7조) 법무부에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법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제4조), 국민참여재판법에도 대법원에 사법참여기획단을 두고 국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지만(제54조), 아직까지 법교육을 국민참여재판과 뚜렷이 연계시키는 내용을 찾아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39) 佐藤伸彦, 法教育に対する「法化」論の射程—裁判員教育との関係について—, 『社会システム研究』(第34号), 2017, 53-6頁.

그 통과가 무산되었지만,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었던 헌법개정안이나 작금의 사법부의 현실은 국민참여재판제도 확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심분 제기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사법권에 있어 국민주권의 행사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제도와 법교육의 연계는 필수불가결한 것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을 때 당장의 법지식을 주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은 이미 일본에서도 예견되었던 바이기도 하고, 법과 관련한 교육과 소양이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식적인 장면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본 법교육 사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국민의 사법참여와 관련된 법교육은 정부의 정책을 주어진 전제로서 단지 그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능력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통제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사법참여가 구상되었다는 점 역시 법교육 과정에서 환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재판원법에서는 놓치고 있었던 한국 국민참여재판법 제1조의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가 법교육에 있어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끝으로 지적한다.

법과대학 폐지 이후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김정현(전북대학교 교수)

목 차

- I. 서론
- II. 법과대학 폐지 이후의 학부 법학교육 현황
 - 1. 제도의 변화
 -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학교의 현황
 - 3. 학부 법학교육의 현황
- III. 학부 법교육의 문제점
 - 1. 법학소양교육의 부재
 - 2. 전문법학교육의 부실화
 - 3. 학문의 융합화 추세에 역행
- IV. 학부에서의 법교육의 방향
 - 1. 교양법학의 다양화 및 강화
 - 2. 새로운 교과목의 개발
- V. 결론

I. 서론

2005년 1월 18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같은 해 5월 16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의결하였다. 10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치열한 찬반논의 끝에 2007년 7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은 법조인 양성과 법학교육에 있어서 일대 변혁을 초래하였다. 법조인 양성 영역에서는 기존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바뀌었고, 법학교육 영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했다(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 이 발표문은 미완성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인용 등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은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신 기존의 법과대학은 학생 모집이 중단되었다. 2017년까지 법과대학을 유지함으로써 재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과 병치하다가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11년이 된 올해부터 법조인 양성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으로 완전한 일원화가 되었고, 기존의 법과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학교에서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로써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에도 법과대학이 그동안 담당했던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에 크나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이제 법학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에서의 학부 비법학과, 학부 법학과의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이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해 법학 학사과정이 폐지된 대학에 한정하여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의 변화 상황을 살펴보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학부 법학교육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도 부차적인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이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이 아니거니와 관련 연구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또한 법학 학사학위과정이 존재하는 대학에서의 법학교육도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밝힌다.¹⁾

II. 법과대학 폐지 이후의 학부 법학교육 현황

1. 제도의 변화

일제 강점기의 법조인 선발은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와 조선변호사시험으로 이루어졌고, 해방 이후 1946년 신설한 사법요원양성소에서 단기 속성교육을 실시하여 사법관 시보를 임명하였다. 이듬해 조선변호사시험을 부활시켜 3회 실시하였다가 고등고시 사법과로 개편하였다. 이는 1949년 8월에 공포된 고등고시

1) 법학 학사학위과정이 존재하는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김경제, “법학교육 연계를 통한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존방안”, 법학논총(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1권 제1호, 2014 ; 정용상, “학부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교육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2011 ; 이관희, “한국법학교육의 정상화 과제 -로스쿨법과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공법연구, 제39집 제4호, 2011 등이 있음

령에 따른 것으로 고등고시는 고등고시 사법과와 고등고시 행정과로 나뉘었다. 1963년 5월 고급공무원을 선발하던 고등고시 행정과는 3급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개편되었고, 판검사와 변호사를 선발하는 시험이었던 고등고시 사법과는 사법시험령에 따라 16회를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01년 3월 사법시험법이 공포되면서 주관부서가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과에서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변경되었다.

사법시험 초기에는 대학졸업자와 졸업예정자 또는 예비시험 합격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였으나, 1973년 응시자격의 제한을 철폐하였다. 하지만 2001년 제정된 사법시험법은 고등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생교육법상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였다(구 사법시험법 제5조). 법학사까진 아니지만, 최소한의 법학과목을 이수해야 사법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도록 한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지식과 법적 소양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²⁾ 또한 대학졸업자가 아니더라도 독학시험 및 학점인정제도를 통하여 학점이수를 할 경우에는 응시기회를 보장하여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직업의 자유 침해 논란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겪었던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폐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사법시험이 2006년부터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법학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이유를 「법학전문대학원법」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³⁾.

2) 사법시험법 제정이유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49592&ancYd=20010328&ancNo=06436&efYd=2001032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최종접속: 2018.10.1.)

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79918&ancYd=20070727&ancNo=08544&efYd=2007092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최종접속: 2018.10.1.)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⁴⁾

“1)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우선,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자유·평등·정의의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있다(이 사건 법률 제2조).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의하여 왔다. 사법시험은 사법시험법에 따라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바, 사법시험 응시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법시험 응시자격에도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다시피 하여(2006년부터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의 학습과정에서도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 제도 등에 의한 학점인정도 가능하여 위와 같은 자격제한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도외시하고 고시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체계적인 법학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험위주의 도구적인 법률 지식만을 습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폭넓은 인문교양지식과 깊이있는 법학지식을 함께 습득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법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과 창의성을 갖추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게 되었다.

(2)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

사법시험제도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응시횟수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니,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있는 폐해가 나타났다. 또한 응시자격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 보니, 법학 이외의 인문사회계열이나 심지어 이공계열의 우수한 인재까지도 전공학과 공부보다는 사법시험에 매달리게 되어 법학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대학교육에까지 파행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법조인 선발 및 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탈락하고 사회 다른 분야로의 진출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전공학부에 상관없이 정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학교육을 마치게 한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함으로써,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한편 국가적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사법시험 합격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학

4) 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등, 판례집 21-1상, 292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법조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법학교육보다는 각종 고시학원 수강에 집중을 했고, 대학의 법학교육이 황폐화되었다는 문제인식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법학을 공부함으로써 각 분야에 능통한 법조전문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설립되었기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에서는 법학 학사과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기존 재학생들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들은 한시적으로 법과대학을 유지했고, 2017년을 끝으로 이들 대학에서 법과대학은 없어졌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25개 대학은 법과대학을 폐지했으며, 분교를 가진 대학교가 분교에 법학과 또는 법과대학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폐지했다. 가령,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정경대학 법학과와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 법학대학 법학과는 전부 통폐합되었다. 반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은 학부과정에 법학과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학교의 현황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 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신청한 4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였고, 2008년 8월 최종 25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을 2000명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대학들에게 정원을 배정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과정에서는 지역안배가 이루어졌고, 서울 소재 대학 12개교·경기도 소재 1개교·인천 소재 1개교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나머지 11개 학교는 거점국립대학교와 지방사립대학교가 선정되었다. 지방 사립대학교 중에서는 동아대학교·영남대학교·원광대학교가 로스쿨 인가를 받았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과 소재지 및 입학정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 현황

대학명(가나다순)	소재지	입학정원
강원대학교	강원도 춘천시	40
건국대학교	서울특별시	40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	120
경희대학교	서울특별시	60
고려대학교	서울특별시	120
동아대학교	부산광역시	80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120
서강대학교	서울특별시	40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150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	50
성균관대학교	서울특별시	120
아주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50
연세대학교	서울특별시	120
영남대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70
원광대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60
이화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	100
인하대학교	인천광역시	50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	120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80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40
중앙대학교	서울특별시	50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	100
충북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70
한국의국어대학교	서울특별시	50
한양대학교	서울특별시	100

3. 학부 법학교육의 현황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들은 2017년부터 법과대학을 폐지했고, 이에 따라 학사과정에서 법학과목은 대폭 축소되었다. 대학에 따라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은 천차만별이었다. 법학과목을 기존의 다른 학과 즉, 행정학과와 일반사회교육과 등에서 일부 개설한 경우가 있는 반면에, 신설학부 내지 학과에서 법학과와 유사한 교과과정을 편성한 경우도 있었다. 법학 학사과정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법과대학과 동일한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는 없지만, 행정학·정책학 등의 인접학과와 연계하여 사실상 법과대학에 준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pre-lawschool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존재했다.⁵⁾

강원대학교는 사회과학대학의 교양과목으로 행정법총론과 헌법을 개설했고, 부동산학부가 부동산공법과 부동산사법을 전공선택으로 개설하고 있었다. 일반사회교육과의 전공과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나, 법교육 전공이 존재했다. 삼척캠퍼스 공공행정학과가 전공선택과목으로 헌법을 개설한 상태이다.

건국대학교에서는 융합인재학과가 법학개론을 필수과목으로, 헌법·민법입문·행정법·지적재산권법·행정법연습을 전공선택으로 개설했고, 교양과목으로 한국법의 이해(영어강좌)·법학입문·직장생활관련상식법률·법과사회·법과리얼마인드·현대인의필수금융법·생활법률을 두고 있다.

경북대학교에서는 행정학부가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담당하고 있고, Pre-Law 과정을 운영한다고 표방하고 있다. 교양과목으로는 현대사회와법, 전공과목으로는 민법총칙·헌법·행정법·법과 사회정의·지방자치법을 개설했다. 일반사회교육과는 현대사회와법·민법과교육·법학교재연·법학·형법과교육을 두고 있다. 그리고 자율전공학부 교양과목으로 현대사회와 법이 있다.

경희대학교는 자율전공학부 글로벌리더전공에서 법학개론을 전공기초과목으로, 헌법·민법총칙·행정법총론·회사법·형법총론을 전공필수과목으로 개설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자유전공학부가 전공필수과목으로 민법·헌법·형법을 두고 있고, 교양필수로 법학관련 핵심교양을 개설했다. 그리고 전공선택과목으로 회사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국제법·행정법·고용복지와법·법사상과법철학·상법·보험해상법·경제법·지적재산권법개론·국제거래법·금융법을 개

5) 이하의 내용은 각 대학 개별학과 홈페이지에서 정리한 내용임

설했다.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학전공 공공법무전공가 양성프로그램은 공통과목으로 법학의 이해를, 전공필수로 국제법 1·재산권론·계약론을 두고 있고, 프로그램 공통교과목으로 국제법 2·민사기초이론·행정법·범죄와 형벌·기본권과 통치구조를, 제2프로그램 독립교과목으로 지식재산권론·채권과법·민사실무세미나를 개설했다.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는 전공필수과목으로 법과사회·헌법을, 전공선택과목으로 민법·범죄와법·법문화와 법의식·법과교육·법과인권을 두고 있다. 행정학과는 전공선택으로 헌법·행정법 1 2를 개설했다.

서강대학교 공공인재 연계전공은 법과현대사회·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이해·국가와 통치구조에 대한 이해·법치행정의 이해·재산관계와법·가족관계와법·민사분쟁처리와법·범죄와 형벌의 이해·기업과법·형사정책과법·미국의 법체계와 소송·국제사회와법·환경과법·저작권의 이해를 개설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주전공으로서의 기존전공과 주전공으로서의 학생설계전공을 각각 두고 있는데, 기존전공에서 법과대학은 선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개 이상의 학과(학문)의 융합을 토대로 한 교과과정을 학생 스스로 구성하여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생설계전공에서 법학 관련 전공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회교육과는 시민교육과 헌법·사회와법률·법교육연습을 개설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융합전공학부 법규범제도학 교과목으로 인권정책과법·국가조직과권력분립·민법총론·범죄와형벌·수사와형사재판절차의이해·법치주의와행정작용·행정과시민의권리구제·비즈니스와법·현대복지사회와법·민사거래관계와재판절차·현대국제법의쟁점·세법입문을 개설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사회과학대학 글로벌리더학부 법무트랙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및 법전문가 양성을 한다고 표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헌법의이해·민법의기초·행정법의이해·WTO와국제경제법·국제사회의법과질서·법의이해·공공조직의이해·범죄와형벌·비즈니스의법규범·채권과법·물권과법·행정구제와법·범죄와사회·가족관계와법률을 두고 있다. 또한 공익법연계전공에서 계약과권리·소유와권리·형법의이해·현대사회와범죄·민사재판의이해·형사재판의이해·경제법·과학기술법·노동법을 개설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은 법학이란무엇인가를 교양강좌로 개설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는 행정법 1 2·헌법·헌법과 민주행정을 전공선택으로 두고 있다.

영남대학교 천마인재학부 정책과학전공은 법학개론·판례생활법률·헌법기초이론·민법총론·물권법·법학통론·세법개론·채권총론·형법총론·채권각론·행정법·통치기구론·형법각론·민사소송법·로스쿨행정법·상법총론·행정법·형사소송법·행정구제법·법학적성논술과영어·헌법소송·회사법·민사연습·상사연습·형법연습·형사소송법연습을 개설하고 있다.

원광대학교는 검색이 용이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 학부 사회와정의트랙에서 법학과목의 일부 이수가능하고, 사회과교육과가 범의식과법교육·헌법의이해를 개설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이 교양과목으로 법학의 이해·범죄와 사회·창업과 법·법의 이해·국제사회와 법을 두고 있다. 사회교육과가 법과 사회·법교육 개론·범죄와 형벌·법교육 이론과 사례·사회문제와 법을 두고 있다. 행정학과가 전공선택과목으로 헌법·법학개론·민법총칙의 이해·행정법을 개설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는 기존학과에 배정되거나 자기설계전공을 할 수 있고, 행정학과 전공과목으로 민법총칙·헌법·형법·행정법총론·행정법각론을 두고 있다.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는 법학개론·민법총칙·채권법·통치구조론·행정구제법·법학공직적성론·행정법각론·형법총론·형법각론·부동산공법·소송실무·국제법을 개설하고 있고, 일반사회교육과는 전공필수과목으로 법학원론·헌법을, 전공선택과목으로 민법 1 2·형법·법학연습·행정법을 개설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는 전공과목으로 헌법기본권론·헌법통치구조론·행정법총론·행정구제법을 개설하고 있고, 사회교육과 전공으로 법과사회·헌법과시민교육·공법과시민교육·사법과시민교육·법교육론·사회법과시민교육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관리학과 전공으로 부동산공법·부동산사법 1 2을 개설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는 전공필수과목으로 법학개론·헌법1·민법1·법과사회를, 전공선택과목으로 형법1·헌법2·민법2·형법2·민법3·상법1·민법4·상법2를 개설하고 있다. 부동산학과 전공으로 부동산공법·부동산사법을 두고 있다.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는 헌법·행정법·민법총칙·지방자치법을 개설하고 있고, 자유전공학부 인문사회과학전공은 기본권과국가조직론·민법일반·형법일반을, 공공안전학전공은 기본권의기초이론·법의정신·형법총론·민법총론·민법각론·형법각론·형사소송법·법과정치·행정법일반·법적논증의이해·소송과 강제집행·형사정책·형사종합사례연습·소송과강제집행·법과사회를 개설하고 있다.

충북대학교 행정학과는 전공선택으로 헌법·민법총칙·행정법을, 사회교육과는 법학통론·한국헌법·공적생활과법·사적생활과법·법교재연구·법생활문제 연구를 개설하고 있다. 자율전공학부는 기존학과배정방식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는 전공선택과목으로 행정법 1·2를, LD학부 사회과학전공 은 헌법·민법·형법·행정법을 개설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정책학과는 법과사회·민사법1 2·헌법학개론·행정법학1 2 3·형법학·상법학·헌법학1 2·민사소송론·형사소송론를 개설하고 있다.

이상의 현황을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학교의 학부 법학교육 현황

유형	내용	해당학교
제1유형	행정학과 또는 일반사회교육과와 같은 기존의 학과가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경우	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부산대학교·인하대학교·전남대학교·제주대학교·충북대학교
제2유형	신설학부 내지 신설전공과정에서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경우	건국대학교·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동아대학교·서강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성균관대학교·영남대학교·전북대학교·중앙대학교·충남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한양대학교
제3유형	법학학사과정 폐지로 법학과목이 축소된 경우	서울대학교·아주대학교·연세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제1유형은 기존 학과가 법학과목을 늘리거나, 그동안의 교과과정이 학생들에게 법학과목으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제2유형은 과거 법과대학의 정원을 일부 신설학부(명칭이 다양함)에 배정하여 법학과목을 다수 개설한 경우이다. 제3유형은 학부과정에서 법학전공과목을 특별히 신설하지 않고, 교양과목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들 대학 중 개별학과가 필요에 따라 법학과목을 1개 정도 개설하는 경우까지 전수조사하지는 못했다. 가령, 서울대학교의 경우 2015년 1학기를 기준으로 9개 단과대학에서 20개 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된 것처럼⁶⁾ 학과가 전공과 연계된 법학과목을 개설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까지 전수조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개설된 교양과목을 전부 조사하기에는 학교에 따라 세부과목들을 파악하는 데 한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과목을 복수로 개설한 학과의 교과과정은 학과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Ⅲ. 학부 법학교육의 문제점

1. 법학소양교육의 부재

법학전문대학원 이전에 학부가 담당했던 법학교육은 법학소양교육과 법률전문가 양성교육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전문법교육을 담당하면서 학부과정에서는 법학 전공이 없어졌으므로 향후 학부 법학교육은 시민교육·기초교육·교양교육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⁷⁾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사회를 규율하는 규범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개별 사회과목들이 선택과목이 되었고, ‘법과정치’ 과목의 선택률이 낮은 상황에서⁸⁾ 대학에서의 법학소양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 전반적으로 규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치주의의 강화, 기업에서의

6) 진중익, “학부법학교육의 미래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제10권 제3호, 2015, 72면.

7) 윤성현,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의 학부 헌법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론 -시민교육과 광의의 전문교육의 투트랙 교육방안-”, 법교육연구 제9권 제2호, 2014, 90면.

8) 2016년과 2017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법과정치를 선택한 수험생은 약 2만 8천명 정도 수준이었다.

준법경영 강조, 규범에 따른 분쟁의 해결, 적법한 절차의 준수 필요성 등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규범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 연줄과 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규범과 규정을 준수하는 일처리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모든 시민이 법에 정통할 필요는 없지만,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법규범에 대해서는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회변화에 맞는 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히려 법학소양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법학과가 사라지면서 학부에서의 법교육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 일부 대학이 기존의 법학과와 유사한 수준의 교과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학사학위과정이 없는 학부에서 커리큘럼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학부 폐지로 말미암아 법학소양교육의 위축이 우려스럽다.⁹⁾

2. 전문법학교육의 부실화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편이지만, 기존의 법과대학에서 개설한 법학과목에 비해 과목수가 현저하게 축소된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제2유형에 해당하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법학과목을 많이 개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1유형과 제3유형의 학교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해 다양한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던 법과대학의 교과과정에 비해서는 적은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형편이다. 법학학사학위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접학문인 행정학·정책학 등과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했고, 그렇다 보니 교과목수는 축소되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제1유형의 학교들은 기존 학과들의 교과과정이 법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형국인데, 해당학과에서 필수적인 교과목만을 두고 있어서 기본적인 법학과목만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다. 제3유형의 학교들은 교양과목 또는 개별학과가 개설하는 법학과목이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대폭 축소된 법학과목이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5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입법고시·법원고시·변리사·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행정사시험에 법학과목이 필수적이고, 각종 공무원시험도 대부분의 응시생이 대학졸업

9) 김광수,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과 법학교육의 신지평”, 법학연구(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6권, 2008, 208면.

생인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법학교육은 중요하다.¹⁰⁾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법학과목 수강이 입학시 평가요소는 아니지만 법학에 대한 진로확인 차원에서¹¹⁾ 혹은 법학을 미리 공부하기 위해서 법학과목을 수강하는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전문법학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는 1년에 2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법학교육이 법학실무를 하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법학은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학문이자 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학전공자가 아니어도 자신의 전공에 따라 전문성 있는 법학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이 학부 재학생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사회적 손실이 될 소지가 높다. 현재 개설된 과목들은 학교에 따라서 편차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학생들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법조인이 아니어도 법학전공자들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민주화와 법치주의의 확산에 기여했는데, 전문법학교육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만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법학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춘 인력들의 사회진출이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민주법치국가를 떠받치는 법률전문가 및 시민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사회의 요구는 여전히 견고하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으며 연구기관, 기업체, 언론, 공직 등에서 여전히 법률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¹²⁾ 전문법학교육의 부실화로 말미암아 쉽지 않을 전망이다.

3. 학문의 융합화 추세에 역행

각 대학들은 자유전공학부 등을 개설하여 학생 스스로 전공을 설계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학문의 융합화 추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전공별·학문별 칸막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전공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을 벗어던지고, 다양한 학문적 자양분을 섭취하여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인재가 필요하다. 변화하는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학은 학문의 융합화 추세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10) 성낙인, “헌법학연구와 교육방법론 연구”, 동아법학 제54호 2012.

11) 전중익, 앞의 글, 77면.

12) 박균성, “법학교육 상생방안”, 경희법학, 제50권 제4호, 2015, 442면.

이를 위해서는 각 학문의 기본이 튼튼해야 한다. 뿌리가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나무가 뺏어나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기초가 확고해야 응용이 가능하다. 법은 제도를 만든다. 법학을 알지 못하면, 제도의 기본골격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법학은 학문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진화하고 있다. 경제학·경영학·사회학·신문방송학·인류학과 같은 사회과학의 영역 뿐 아니라 인문과학의 영역인 문학·미술·음악·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법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또한 자연과학의 영역에서도 예컨대 법의학은 이미 법학과의 기본과목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밖에도 조세·건설·환경 영역에서도 지식 공유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소위 융합학문시대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기술과법 내지 지식재산권 영역에서는 더욱 더 지평을 넓혀가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관심을 촉발시키는 신성장 학문이라 할 수 있다.¹³⁾

이러한 학문 융합화 추세에 법학 교육이 부실화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IV. 학부에서의 법교육의 방향

1. 교양법학의 다양화 및 강화

교양법학교육은 민주법치주의의 보루가 되는 민주법치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법학교육은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며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양법학교육이 행해져야 한다.¹⁴⁾ 교양법학의 강화가 필요하다. 민주법치국가의 건설에 국민들의 법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실제로 현대적인 다원화사회에서 법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양있는 대학생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법교육의 이수가 필수적인 시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에서는 법학개론 또는 법학원론 수준의 과목 위주로 교양법학을 운영하고 있다.¹⁵⁾

13) 성낙인, 앞의 글, 70면.

14) 박균성, “법학교육 상생방안”, 경희법학, 제50권 제4호, 2015, 436면.

15) 성낙인, 앞의 글, 76-77면.

법과대학이 폐지된 상황에서 이들 교양과목들을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생활하는데 그리고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들로 다양화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법과대학이 존재하던 때에는 학생들이 심화된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는 법과대학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지만, 현재 법과대학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양법학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다양한 교재개발과 교수방법이 요구된다.

현재 교양법학의 수준은 과거 법학개론 또는 법학원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법학분야의 지식을 수박겉핥기식으로 배우는 격인데, 이러한 과목 수강으로는 법학에 대한 지식습득은 둘째치고 법학에 대한 흥미를 갖기 어렵다. 법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양법학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이론교육방법의 연장선상에서 문제 해결 중심의 과목들을 오픈교과목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이 방안을 주장하는 입장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법분야를 이론적으로 다루는 법학개론과도 다른 것이고, 생활 속의 법률문제를 다루는 생활법률 류의 과목과도 다른 것이다. 각각의 법분야에서, 또는 2-3개의 법분야를 통합한 영역에서 비교적 저난이도의 사례 해결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을 개설하자”는 것이다.¹⁶⁾

그리고 사실 특정 전공의 교양과목을 확대하는 것은 각 대학이 처한 현실 때문에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대학 내의 전공별 칸막이, 대학의 관료제적 시스템, 학사과정 개편의 어려움 등이 결합하여 교양법학의 확대를 어렵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수요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 구축을 강조하는 주장을 주목할 만하다. 이 주장에 따르면, 교양법학관리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매학기 말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교양법학 강좌목록을 제시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 이상의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과목 개설을 의무화하자고 한다.¹⁷⁾

16) 김종서, “법학전문대학원 밖의 법학교육 : 그 과제와 방법”, 법학연구(인하대학교), 제16권 제3호, 2013, 283면.

17) 김종철,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제와 전망 : 로스쿨 체제하에서 교양법학교육의 필요성과 범위”, 법과사회 제35권, 2008, 41면.

2. 새로운 교과목의 개발

소위 융합학문시대의 법학은 새로운 교과목을 개발해야 한다. 가령, IT과목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법 또는 기술과법 과목은 이공계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학문일 것이다. 그 외에도 특수화된 법과목, 예컨대 법의학(의료법), 국제거래법, 통상법, 금융법, 통일법, M&A법 등은 로스쿨에도 개설되어 있지만 학부에서도 유관학문분야에서 개설함으로써 당해 학문분야의 수요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또한 법학의 일정 영역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공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새로운 교과목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 비법학전공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수강하면서 법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전문법학분야 지식 습득을 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3. 법학교육 주체의 문제

앞에서 분류한 세 가지 유형 중 신설학부 내지 신설전공과정에서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제2유형의 대학들은 다양한 교양법학과 새로운 법학 교과목을 교육할 주체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행정학과 또는 일반사회교육과와 같은 기존의 학과가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제1유형의 경우에는 법학과목을 증설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법학학사과정 폐지로 법학과목이 축소된 제3유형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각 대학마다 처한 여건과 재정적 문제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단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부에서의 법교육이 현재처럼 약화되는 것은 규범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사회변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다.

결국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법학부의 부활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법학전문대학원법을 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학부학사과정에서 교양법학과목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법학교육이 현재처럼 학부과정에서 부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성낙인, 앞의 글, 77면.

V. 결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법학과 폐지는 법학교육에 엄청난 과급효과를 미쳐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본 연구가 주목한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은 크게 축소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다. 현 체제에서 법학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전문법조인 양성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담당하게 됐지만, 학부 법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법률수요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에 따른 목표 설정과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¹⁹⁾ 전문적인 법학교육과 연구 못지않게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법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교육과정의 개편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19) 김혜정,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선방향”, 영남법학 제34호, 2012, 207면.

참고문헌

- 김경제, “법학교육 연계를 통한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존방안”, 법학논총(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1권 제1호, 2014.
- 김광수,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과 법학교육의 신지평”, 법학연구(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6권, 2008.
- 김재형/박승남/김동엽,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 법학논총(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1권 제1호, 2014.
- 김중서, “법학전문대학원 밖의 법학교육 : 그 과제와 방법”, 법학연구(인하대학교), 제16권 제3호, 2013.
- 김종철,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제와 전망 : 로스쿨 체제하에서 교양법학교육의 필요성과 범위”, 법과사회 제35권, 2008.
- 김현철, “국민 법의식의 변화와 법교육”, 저스티스, 2010, 12.
- 김혜정,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선방향”, 영남법학 제34호, 2012.
- 박균성, “법학교육 상생방안”, 경희법학, 제50권 제4호, 2015.
- 성낙인, “헌법학연구와 교육방법론 연구”, 동아법학 제54호 2012.
- 윤성현,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의 학부 헌법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론 - 시민교육과 광의의 전문교육의 투트랙 교육방안-”, 법교육연구 제9권 제2호, 2014.
- 이관희, “한국법학교육의 정상화 과제 -로스쿨법과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공법연구, 제39집 제4호, 2011.
- 이상돈/김나경, “법학교육방법의 개선방향”, 고려법학 53권, 2009.
- 전종익, “학부법학교육의 미래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제10권 제3호, 2015.
- 정용상, “학부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교육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2011.

한국법교육학회(Korea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1동 423호 (우: 08826)

TEL: 010-7275-3810

E-mail: lawedu@hanmail.net

간사: 김경래·전진현·정용현

홈페이지: 한국법교육학회 - lawedu.org

한국법교육센터 - www.lawedu.or.kr

법무부 법교육 홈페이지 - www.lawedu.go.kr
